

碩士學位論文

지도교수 황진수

노인학대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thod to prevent elder abuse --

2002년 8월 일

韓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祉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金光淑

碩士學位論文

지도교수 황진수

노인학대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thod to prevent elder abuse --

2002년 8월 일

韓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祉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金光淑

碩士學位論文

지도교수 황진수

노인학대 방지 대책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method to prevent elder abuse --

위 논문을 행정학 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년 8월 일

韓城大學校 行政大學院

福祉行政學科

社會福祉專攻

金光淑

金光淑의 행정학석사학위논문을 인정함

2002년 8월 일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 목 차 -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 목적	6
제2절 연구 방법 및 범위	10
제2장 이론적 배경	10
제1절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10
제2절 노인학대의 원인	23
제3절 선행연구	27
제4절 외국의 노인학대 방지 대응방안	39
제3장 노인학대 방지시책의 현황과 문제점	57
제1절 노인학대 사례 및 현황분석	57
제2절 노인학대방지 시책의 문제점	63
제4장 노인학대 방지 정책의 개선방안	69
제1절 법률상의 방지대책	69
제2절 제도상의 대책	73
제3절 시설지원 대책	75
제4절 전문인력의 양성	77
제5장 결론 및 제언	78
참고문헌	84
영문초록	88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최근 가족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삶의 질을 높이려는 서구적인 풍토가 급속히 확산되고 IMF 이후에 취업의 어려움과 정년의 단축으로 인한 중견간부의 저령화, 각 분야 및 업종에서의 구조조정 바람으로 젊은 노인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 인구 추계자료에 의하면 노인인구가 1995년에는 65세 이상이 5.9%이었고 2000년에는 7.1%를 달하여 학문적으로는 7% 이상이 노령화 사회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2000년부터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10년에는 10% 2020년에는 13.2%로 증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옴에 따라 노인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 및 국가적인 효과적 대처방안 강구는 국가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관리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 특히 경제적 여건의 개선과 의학의 발달로 75세 이상의 후기 고령인구가 크게 증가하여 2000년에 2.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2020년에는 고령인구가 약 13.2% 까지 2030년에는 1천만 명이 넘어 전체인구의 19.3%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하여 고령노인의 절대적 수의 팽창은 많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이들 노인 인구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의존성이 높은 가족이나 사회의 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최근 평균수명의 증가와 동시에 출산율이 현저히 감소된 결과로 인하여 가까운 일본이나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빠른 고령화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 노령인구의 약 33.5% 약 90만 명에 달하는 노인이 관절, 심장병 등 만성퇴행성 질환으로 식사, 목욕, 병원이용 등 일상생활에서 제3자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인지적 장애로 인한 치매 노인 인구도 1997년의 24만2천명에서 2000년에는 27만8천명으로 늘어나고 2020년에는 61만 9천명으로 계속해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와

같이 신체적, 정신적, 재정적으로 가족이나 사회의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노인문제를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시키게 되었다.

노인인구는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으로 의존성이 높은 취약 집단으로 가족이나 사회의 부양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이며, 전통적으로는 자녀가 그들의 노부모를 부양해 왔고 그리고 부양하기를 기대하는 사회분위기에서 자녀들의 행복한 삶에 대한 귀찮은 존재이고 부담스러운 짐으로 전락해 버렸다. 지금까지 노부모의 부양을 주로 맡아왔던 여성들의 취업률이 상승하고 여성들의 자아 실현욕구가 강화되어 그 동안 당연하게 여겨져 왔던 노인에 대한 가족부양의 기능을 맡을 계층이 점차 사라져 가고 있다.

1998년 7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어 가족폭력의 문제가 큰 관심사가 되었으나 주로 부부폭력과 아동 학대에 관한 것으로 집중되어 신체적, 경제적 능력이 없는 노인 문제에 대한 것은 실제 관심 밖으로 밀려나 있는 실정에 있다.

노부모의 학대의 문제는 가족폭력과 마찬가지로 사회윤리의 파괴로 이어져 정신적인 공동화를 촉진시킬 수 있고 약자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던 좋은 우리의 미풍양식과 우리나라의 좋은 전통윤리가 깨져서 응집력이 없는 사회로 흘러갈 수 밖에 없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노인학대의 문제는 가정 내 폭력의 은폐적 속성으로 장기화, 잠재화 될 가능성마저 높아서 사회의 어두운 면이 증가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국가정책에 암초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극히 꺼려하는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성과 효를 중시하는 가치관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우리는 노인학대 문제를 소홀히 여겨왔지만 우리나라도 역시 가족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노인들을 완전히 보호해 줄 수 있는 '성역'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언론매체 및 여러 연구를 통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도 노인학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사

회문제로 쟁점화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다. 1)

외국의 사례를 조사해 보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지금까지 생활해 왔던 가정이라는 울타리를 떠나 시설에 보내질지 모른다는 염려와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감의 부족 등이 노인 존재를 노출시키는데 대한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노인학대가 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고, 많은 노인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성인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구성원이 노인을 학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노인 스스로가 자신이 학대받았다는 사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린다. 더욱이 노인학대에 대한 공공의 무관심과 학문적 관심의 부족으로 우리나라 사회에서는 결과적으로 노인 차별주의가 야기되었고, 노인들이 성인자녀에 의해 학대를 받을 가능성에 대한 외면을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누가 노인을 모실 것인가?'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있다' 등 매스컴에서 보도하는 일련의 프로그램들은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심을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 2) (송현애, 전길양:1998).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노인학대에 대한 용어마저도 합의된 정의가 없으며 선행연구 및 조사도 매스컴을 통해 알려진 학대사례분석, 노인학대의 척도 개발을 위한 연구 등에 머무르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노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힘없고 병약한 체 방치되어 있는 노인들을 위한 근본적인 복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인학대가 왜 발생하는지 관심을 갖아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우선 노인학대 방지 대책을 연구하기 위한 일환으로 먼저 노인학대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노인학대의 특성이 무엇이며 그 주요 원인을 규명하고 노인학대가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어떤 유형이 있는 지에 대한 사례조사를 연구하여 모든 계층이 두루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지사회로 나아갈 수 있

1) 이선이(1998).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 송현애, 전길양.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2호, 대한가정학회, 1997, pp. 359-372

도록 노인학대를 근절시키기 위한 각종 사회적인 대책 및 법적 제도화 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자 한다.

제2절 연구방법

노인 학대방지 대책을 연구하기 위하여 먼저 문헌조사를 통하여 노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확정하고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특성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노인학대의 본질적인 원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노인학대 사례를 조사하여 노인학대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여 살펴봄으로써 노인학대 문제 발생에 대한 원인과 사회에 끼치는 영향문제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노인학대의 효과적인 대책을 연구하고 노인인력을 효율적으로 사회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외국의 사례연구와 국내의 연구 등을 분석하고 노인복지에 관련된 복지기관에 전화상담을 통한 최근의 경향도 분석하여 보고 법적인 절차, 제도에 대한 개선점이 무엇인가를 규명해보고자 한다.

노인인력도 국가에 귀중한 인력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하며 노인학대에 대한 법적인 보호와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 및 법적인 정비에 주요한 관점을 두고 연구하였다. 본 연구로 노인의 학대를 근절하여 우리나라 미풍양속인 부모님을 잘 모시고자하는 경로사상의 회복으로 사회의 질서를 바로잡는데 기여하고 싶고 또한 노인인력의 효과적인 활용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노인학대의 개념 및 유형

1)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 문제는 1975년 British Medical Journal에 '노인의 폭행(granny battering)'³⁾이라는 논문이 발표되면서 대중적인 이슈가 되었으며,³⁾ 1977년을 기점으로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연구와 법적인 관심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들이 자식에 대한 지나친 열정으로 모든 물질적, 정신적 노력을 다 쏟아 붓고 경제적 능력과 신체적 능력을 다 잃어버린 후 자식들의 부모에 대한 냉대와 부모봉양 포기, 사회적 무관심 등으로 무기력하게 사회의 어두운 존재로 남아있게 되어 사회에 부담을 주는 문제로 등장했고, 그 수에 있어서도 급격한 팽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방치함으로써 국가적 생산능력을 방기하고 사회비용을 증가시킴으로써 국가적 낭비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개념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커다란 이슈가 되었다. 노인학대 문제를 효과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우선 노인의 개념을 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한다. 오늘날 노인의 개념을 정의해야 할 당위성으로는 노인 노동력의 사회적 안정가치로서의 중요성 노인인구 수의 증가에 따른 또 하나의 사회의 소외계층으로서의 복지문제의 제도적 필요성, 사회 윤리를 세워야 하는 국가 철학의 중요성, 세계적 복지국가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 개발로 모든 국민의 행복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 매우 절실한 문제이다. 본 논문에서는 노인학대 방지대책을 연구하기 위한 노인학대의 연구로서의 노인의 개념을 다음과 같은 범주로 분석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첫째로 효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가족 윤리로 가정의 화목을 이루고 이웃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랑을 배우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육성할 수 있는 국가적 문화적 윤리관의

3)Burston, G. R. (1975 Granny Battering. BMJ v.3, p. 592

바로 세움에 필요한 보호대상으로서의 노인계층에 대한 문제, 둘째로 21세기 사회가 지향하는 모든 계층을 모두 하나의 인권으로서 보호받아야한다는 평등권 확보에 대한 문제, 셋째로 다른 계층에 비하여 신체적 정신적 허약으로 인한 무능력 가능성이 높은 약자를 보호해야할 인권의 문제, 네 번째로 많은 경험을 쌓아 온 경험능력의 전달자로서 후손에게 살아온 인생의 지혜를 전수해야 할 지혜의 커뮤니케이터로서의 중요성으로 국가가 당연히 보호해야할 계층으로서의 연구를 위하여 노인학대의 개념을 접근하고자 한다. 4)

(1)개인의 자각(self-awareness)에 의한 노인: 개인 스스로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노인으로 규정하는 것이므로 노화의 생물학적, 사회적 및 심리적 측면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는 장점이 있다.

(2)사회적 역할상실에 의한 노인(사회적 노인): 주요한 사회 지위와 역할이 상실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노인으로 보는 것으로, 사회적 직업 활동에서 퇴직 또는 가정에서의 주부의 지위와 역할을 이양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노인이다.

(3)역연령(chronological age)에 의한 노인 : 시간경과의 단위인 달력상의 시간에 의하여 일정한 연령(60세 또는 65세 등)에 도달한 사람으로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의 자를 노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정의는 노인의 생리적, 신체적, 사회적, 심리적인 면의 노화의 제 특성을 상당한 정도로 잘 수용하고 있다.

(4)기능적 연령(functional age)에 의한 노인: 개인의 특수한 신체적 및 심리적 영역에 있어서 기능의 정도에 의해서 노인을 규정하는 것이다. 이는 특히 산업노년학(industrial gerontology)에서 관심을 갖고 발전시키고 있는 노인의 정의이다. 따라서 연령으로는 아직 노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회적 역할이 상실된 상태의 사회적 노인에 해당되지 않으나 사회적 역할이 상실된 상태의 사회적 노인에 해당되게 된다. 또한 평균 수명도 현재의 73.5세에

4) 박준기.(1998) 「한국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강남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7-9

비해 무려 21년이나 짧은 52.4세 (통계청, 1996)로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자의 수가 그리 많지 않은 시대였다. 노인 학대의 개념을 정의하자면 미국에선 '때 맞는 노인 신드롬(the battered elder syndrome)' (Block 과 Sinnott, 1979), "때 맞는 부모 (the battered parent)" (Harbin & Madden, 1979), "학대받는 노인 (abused elders)" (Sengstock, Barrett & Graham, 1984) 등의 용어들이 초기에 언급되었으나, 오늘날 많은 연구가들은 '노인학대(elder abuse)', "노인방임 (elder neglect)" 이란 용어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Milner, 1990). 그러나 아직까지도 노인학대가 무엇인지에 대해 일정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美)의 기준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듯이 학대 또한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 가지각색의 추론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노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을 학대로 본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⁵⁾ 이렇듯 노인학대의 정도에 대한 측정은 학대의 정의를 어떻게 내리느냐에 따라 그 숫자가 천명이 될 수도 있고, 백 만명이 될 수도 있다. 이처럼 학대에 대한 정확한 측정과 공식적 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노인학대 정의에 있어 명확성과 일관성이 부족하고 학대하는 사람의 의도여부에 대한 판단도 모호하기 때문에 노인학대는 정확히 정의 내리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이상의 정의들은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를 잠재적인 학대 행위로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표준화된 명확한 노인 학대의 정의 없이 내려진 연구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사회적, 법적 구체책 및 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그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학대에 대한 충분하고 인정할 만한 정의를 내리지 않는다면 노인 학대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일정한 합의점을 찾는 일은 어려울 것이다. 더욱이 최근 들어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는 각 민족에 따라 다르게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 주장되고 있다. 즉 사회 내

5) Johnson, I. M.(1995) 'Family member's perceptions of attitudes toward elder abuse, Families in socie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 문화적 규범 및 도덕적 규범이 각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일은 각 나라마다 발생하고 있는 학대 발생률을 정확하게 탐지할 수 없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학대의 정의를 내리는 일은 여전히 어려우면서도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원인을 논하기 이전에, 학대의 본질을 제대로 정의하고 이해하는 것이 먼저 필요하다. 현 시점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학대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해를 가하는 개념의 소극적 개념에서 벗어나 노인의 인권과 보장을 전제로는 적극적인 넓은 범주로 보고 있다. 그 예로 미국의 'The Action on Elder Abuse'에서는 노인학대를 '모든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해나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단일한 혹은 반복적인 행동 또는 적절한 행동의 부족'으로 정의한다. 노인학대의 개념을 방임을 포함한 진보된 의미에서 규정하면 노인과 동일 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그리고 기타 부양자나 친척에 의하여 행해지는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착취 및 방임과 노인 자신에 의한 방임을 말한다. 시설보호가 광범위하게 발달되어 있는 서구 여러 국가의 노인학대는 넓은 범주로는 가정학대와 시설학대 두 개의 범주로 구분하며, 가정의 노인학대는 피해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성인자녀, 배우자, 친지 등의 보호 제공자가 행하는 학대이고 시설학대는 노인에게 비용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과 같은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이다. 6)

본 연구에서의 노인학대 연구에서는 배우자의 학대는 제외하였으며 자녀 및 배우자와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기타 친, 인척으로써 주로 비속에 속하는 대상으로 학대자를 한정하였으며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착취, 방임 등에 관한 학대를 받은 대상으로 정하였다.

6) Tatara, T.(1990) 「Elder Abuse in the United States: An issue paper, prepared for the Administration on Aging,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학대의 개념은 시대나 나라에 따라 다르게 취급될 수 밖에 없으며 학자들 간에도 일치된 개념과 유형을 찾기도 어렵다.

그러나 대체로 노인학대는 방임, 방치, 무시, 부적절한 처우 (maltreatment)를 포함한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언어적, 의료적, 성적 학대 등으로 그 유형을 분리할 수 있다. 타라(Tatara, 1990)는 노인학대의 범주를 다음과 같이 분류했다.

(1)가정 내에서 가족구성원에 의해 발생하는 노인학대

(2)노인시설에서 시설종사자에 의해 가해지는 노인학대

(3)노인이 신체적, 정신적 손상으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자기방임, 자기학대로 구분하였다. 이것은 노인학대 주체를 중심으로 분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블록과 시노트(Block & Sinnott:1979)⁷⁾ 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착취, 강제로 거처를 외부로 옮기는 것, 약물을 과도하게 먹이는 것을 노인학대로 분류하였으며 노인학대 수단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오맬리(O'Malley:1979)⁸⁾ 등은 심리적 학대를 노인학대에 포함시키고 노인학대와 방임을 구분하여 노인학대는 신체적, 언어적, 심리적 공격, 경제적 남용 또는 소유물이나 재산의 남용, 노인의 권리침해를 포함하여 주로 노인학대 형태를 중심으로 분석하였고 보았다.

히키와 더글라스(Hickey & Douglass:1981)⁹⁾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한 부적절한 처우로 보고, 이는 소극적 및 적극적 방임, 언어적 또는 정서적 학대와 신체적 학대를 포함한다고 했다.

7) Block, M. R. & Sinnott, J. D,(1979) 'Methodology and Results. in M. R. Block and J. D Sinnott(Eds). The Battered Syndrome: An Exploratory study. 박준기. 「한국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에서 재인용

8) 최해경.(1993)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논문집, 통권 제22권」에서 재인용

9) Hicky, T., & Douglass, R. L.(1981) 「Neglect and abuse of older family members: Professionals' perspectives and case experiences」.

『The Gerontologist, vol.21, no.2』 pp.171-176

첸(Chen:1981) 등은 노인학대 유형을 노인에 대한 고의적인 신체적 고통이나 상해를 가하는 것, 영양의 결핍, 정서적 손상, 정신적 고통, 무분별한 구급, 정서적 방임, 강간과 강간미수, 서비스의 박탈, 비자발적 고립과 재정적 남용을 포함시켜 구분함으로써 신체적 정신적인 것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의 전국 노인학대 자원센터에서는 노인학대의 정의를 신체적 학대(physical abuse), 성적학대(sexual abuse), 정서적/심리적 학대 (emotional/psychological abuse), 방임(neglect), 금전적/물질적 착취(financial/material exploitation), 기타 자학 /자기방임(self-abuse /self-neglect)으로 구분하였다.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은 영국의 대표적인 학자 메르빈(Mervyn Eastman,1984)은 노인학대를 노인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에 의해 계획된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 학대로써 돌발적인 부상과 구별하고 있으며 노인학대에 대한 정의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성적학대, 유기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영국의 노인협회(Age Concern, 1991)¹⁰⁾는 여러 민간 단체와 협력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였다. 그 가이드라인에서 노인학대를 ①육체적 학대 ②심리적 학대-위협, 비난, 폭언③식사, 난방, 의류의 공급결여 및 오락의 기회제공 결여④강제적 결리 ⑤성적학대 ⑥약물남용 ⑦금전과 재산의 남용으로 구분하였다.

일본의 경우 1993년에 처음 실시된 전국적 실태조사 (多久良紀夫:1994)에서는 노인학대를 1)신체적 폭력; 2)성적학대; 3) 심리적 장해를 주는 학대, 4)경제적 학대; 그리고 7) 개호 등 일상 생활상의 보호의 방치, 태만을 포함한 방임(Neglect)으로 정의하였다.¹¹⁾

이해영은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노인학대를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방임(방치), 경제적 착취로 크게 분류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신체적 폭력이나 상해, 음식제공과 의료 조치

10) Age Concern England(1991), Abuse of Elder people Guidelines for Action

11) 이해영(1996). 「새로운 복지문제로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고찰」, 『한국노인문제연구소 학술계간지』 통권 3호, pp. 301-328에서 재인용

등의 거부, 방치, 감금, 폭언, 모욕, 노인재산의 유용 등을 말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서구와 달리 자식이 노인을 부양하는 것을 당연시 해 왔으므로 부양거부와 노인유기도 노인학대의 유형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¹²⁾

우리나라의 연구를 살펴보면 최해경(1993)은 신체적, 심리적, 언어적, 성적 학대와, 의료적 부적절한 처우, 방임 및 재정적 착취 등으로 노인학대를 구분하였으며¹³⁾,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의 경우도 신체적 폭력, 언어적 및 정서적 학대, 방임의 형태로 노인 학대를 유형화하였다. ¹⁴⁾

이상의 연구들을 분석해본 결과 노인학대는 연구자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하여 볼 수 있지만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가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시작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노인 학대를 우선 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배우자, 자녀, 형제, 친구, 케어제공자 등)에 의하여 노인자신의 집, 노인이 기거하고 있는 친권자의 집, 케어제공자의 집에서 행하여지는 어떠한 형태로든 심한 대우 또는 가해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여기에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정서적 학대, 경제적 착취, 유기, 방임, 부양거부 등의 유형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노인학대는 신체적, 경제적, 정서적인 측면에서 연구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측면에서는 직접적인 폭력, 약물사용, 음식, 난방, 오락을 제공하지 않는 것을 모두 포함해야 하며 정서적 측면은 위협과 모욕, 불안조성, 권리침해, 감정억제 강요 등이 포함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의료적 부적절한 처우, 재정적 착취, 물질적 학대 등을 모두 포괄해서 문제점이 분석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다시 말해서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과 거주를 같이하고 노인 수발을 담당하고 있는 부양자가 60세 이상의 노인에게 의도적으로 신체적, 정서적인 손상을 가하거나 부양의

12) 상계서

13) 최해경(1993).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논문집 제22권』, pp. 273-286

14)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무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신체적, 정서적, 재정적 영역과 방임'이 중심적인 내용이라고 분류 할 수 있다.

노인학대를 정의하는데 있어서 주된 문제는 학대라고 생각할 수 있는 행동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학대행동의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 노인학대의 유형에 대한 국내외 연구자들의 견해를 분석해 본 것이 (표1) 이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연구자에 따라 그 내용이 매우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어떤 연구자는 신체적인 학대만을 노인학대로 본 경우도 있고, 어떤 연구자는 폭력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행위를 노인학대라고 본 경우도 있다. 이렇듯 연구자마다 다양하게 분류를 하고 있어서 노인학대 영역을 일정하게 합의해 내기는 어렵지만 대체적으로 크게 신체적 학대, 정서적/언어적 학대, 재정적 학대가 포함되어 있고, 그 외 적극적 방임과 소극적 방임으로 구분되는 방임이 언급되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성적 학대 또는 자기학대까지도 노인학대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노인이 자신의 집에서 내쫓기거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다른 환경에 있도록 강요되는 것과 같은 노인 개인의 권리 침해 또한 노인학대의 한 영역에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 학대와 방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함께 묶어서 구분을 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표 1>의 17, 18, 19번이 해당된다. 지금까지 학대는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노인에게 해를 가하는 과정이라면 방임은 노인의 행복이나 건강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명히 두 개의 개념은 구분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였다.¹⁵⁾

방임은 일반적으로 부양자가 노인의 욕구를 잘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것으로, 다시 적극적인 방임과 수동적인 방임으로 구분되는데, 적극적인 방임은 노인에게 신체적이거나 정서적인 고통을 가하려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시도로써 부양자가 노인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음식, 물, 은신처, 의복, 의료적, 정서적 지원을 제공할 부양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

15) 송현애, 전길량.(1997) 전개서, pp. 359-372

와는 달리 수동적인 방임은 해를 입힐 의도 없이 부양자가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 욕구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부양자가 노인의 욕구를 충분히 알거나 깨닫지 못했을 경우, 또한 부양자의 시간, 재정, 기술, 에너지의 부족으로 노인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노인에게 물, 음식물, 약 등을 주지 않는 경우 또는 노인이 불편할 때 침대시트를 바꿔 주는 것을 잘 하지 않는 경우를 학대로 볼 것인가 아니면 방임으로 볼 것인가라는 선택의 애매모호함이 제기 되고¹⁶⁾ 적극적인 경우와 소극적인 경우의 의도성 판단이 모호할 수 있다 라는 판단 하에 이 두 가지를 묶어서 함께 보는 연구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와 더불어 어떤 경우에는 '학대'나 '방임' 이라는 용어 보다는 고의로 한 행위와 모르고 행한 행위가 모두 포함된 '노인에 대한 불충분한 부양 (inadequate care of the elderly)' 또는 학대와 방임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노인학대(mistreatment of the elderly)'란 용어가 더 선호되기도 하였다.

전반적으로 노인학대 영역을 일정하게 합의해서 정의 내리기는 어렵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까지는 부모 또는 노인에 대한 부양의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점점 그 의식이 낮아지고 있어서 연구 결과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노인들에게 행해지는 학대의 개념을 적극적 또는 소극적 방임이 포함된 좀 더 폭넓은 의미로 정의하고, 세부적인 영역으로 크게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16) Pagelow, M. D.(1984) 「Family violence」 Praeger Pub.

노인학대의 유형	학자와 연도
신체적 학대 (또는 신체적 폭력)	Gioglio & Blakemore(1983) Pillemer & suitir(1992),paveza etal.(1992)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Pillemer & Moore (1989)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Neikrug & Ronen (1993)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이영숙 (1997)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방임	pillemer & finkelhor(1988)
신체적 학대, 언어적 학대	Gilliland & jimenez(1996)
신체적 학대, 방임, 기타(나머지 모든 학대유형)	Johnson (1995)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언어적 학대, 방임	Douglass et al. (1980) Hickey & Douglass(1981)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block & sinnott(1979) wolf, strugnell & godkin(1982) o'malley et al.(1983) krauskopf & burnett(1983) douglass(1989) 김미경 (1998)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성적학대, 방임	philips(1983) Tartara(1990) shiferaw et al.(1994) wiehe(1998) 서혜경(1992)

11.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자기학대, 부양거부	박준기 (1998)
12.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언어적 학대,	변형욱 (1997)
13.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 언어적 학대, 방임	한동희(1996) 김현수(1997) 김한근(1998)
14.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 재정적 학대, 언어적 학대, 방임, 성적 학대, 의료적 학대(권리침해)	moon & williams (1993) 최혜경 91993)
15.	신체적학대, 정서적학대,재정적학대,방임,권리침해,자기학대	Lau & kosberg (1979)

16.	신체적학대,정서적학대,제정적학대,방임,성적학대,(감금 및)유기,자기방임	The national center on elder abuse(1994) neale et al.(1996)
17.	신체적 학대와 방임, 정서적 학대와 방임, 재정적 학대 방임(권리침해)	quinn & tomita (1986) senstock & hwalek (1987) paris et al. (1995)
18.	신체적학대와방임, 정서적학대와 방임, 재정적학대와 방임,권리침해	Rosenblatt (1997)
19.	신체적 학대 및 유기, 신체적방임, 정서적 학대와 방임, 재정적 학대와 방임	전길양,송현애 (1997) 이성희, 한은주 (1998)
20.	학대, 방임, 착취	Hwalek et al. (1996) Lachs et al. (1997)
21.	폭력이라 부를 수 있는 모든 것	Straus, gelles & steinmetz(1980)

(표 1) 국내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노인학대의 유형

(표1)에서 보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노인학대를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재정적 학대로 구분하는 것에 대부분 일치하지만 언어적 학대, 성적학대, 권리 침해 등으로 대한 구분하는 등 학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 그리고 방임의 경우 어떤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경우와 소극적인 경우로 분류하기도 하고, 어떤 연구에서는 전체 적인 의미에서의 방임으로만 분류하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본 결과 노인학대 유형과 학대의 범위 및 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신체적 학대 (physical abuse)

신체적 학대는 폭력 등에 의해 신체적 고통, 상해, 상처 또는 질병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로 뺨을 때리는 것에서부터 살인에 이르기까지의 신체적 접촉 행동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때밀기, 꼬집기, 때리기, 머리채 잡아당기기, 강제로 먹이기, 손바닥으로 치기, 돌이나 벽들로 때리기, 흉기 등의 무기로 위협하거나 찌르기, 총으로 쏘기, 온당하지 못한 장소에 노인을 내버려 두고 신체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 그리고 성적 강요

나 성폭행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그 수가 다른 학대에 비하여 많지는 않지만 그 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비가 없으면 상당한 윤리적 피해를 감수해야만 할 것이다. 소극적인 형태에서의 신체적 학대는 노인이 쾌적한 생활을 하거나 해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부양자가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¹⁷⁾ 식사나 물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안경, 보청기, 틀니 지팡이 등 신체적인 보조기구를 제 때에 마련해 주지 않으며, 노인을 위한 아무런 안전 예방 조치를 행하지 않는 것 등이 포함된다.

2) 정서적 학대 (emotional or psychological abuse)

정서적 학대는 노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심리적 학대와 언어적 학대와 상호 교환적으로 사용되는 개념이다. 보통 심리적 고통 또는 상처를 유발시키는 의도 또는 행동으로 정의되고 있는 정서적 학대는 보통 신체적 학대를 수반하거나, 신체적 학대로 발전한다. ¹⁸⁾

정서적 학대는 언어적, 비언어적 행동으로 위협이나 모욕 등의 습관적 언어적 공격, 노인에게 창피를 주는 것 등과 노인을 어린아이처럼 취급하거나, 가족, 친척 또는 친구로부터 고립시키는 것 등이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소극적인 방임의 개념으로 본 정서적 학대는 의존적인 노인에게 사회적인 격려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노인을 오랜 시간 동안 혼자 내버려두거나, 무시 또는 침묵으로 대하거나 일상적인 정보 또는 뉴스 일상 생활사 등에 대한 얘기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다른 정서적 학대의 한 형태로 유기 또는 시설입소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눈에 띄는 신체적 학대와는 달리 정서적 학대는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들

17) Paris, B. E., Meier, D. E., Goldstein, T., Weiss, M., Rein, E.

D.(1995) 'Elder abuse and neglect: How to recognize warning signs and intervene]. *Geriatrics, vol. 50, no.4*, pp. 47-51

18) Lachs, M. S, & Pillemer, K(1995) 'Aging parents of elderly persons] *The New English Journal of Medicine vol. 332*, pp. 437-443

이 아니기 때문에 정의하기도 어렵고, 측정하기도 용이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점이다.

3) 재정적 학대(financial abuse)

재정적 학대는 노인의 소득 또는 자원을 부양자의 재정적 또는 개인적 이득을 위해 오용하는 것으로, 노인의 돈 또는 재산을 훔치는 것으로 어떤 재정적 문제를 강제로 처리하게 하거나, 노인의 뜻을 바꾸도록 위협하거나 그 밖의 법적 절차를 통해 위협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간혹 재산상속 문제를 둘러싸고 자녀가 노부모를 학대하는가 하면 나이든 노인이 갖고 있던 재산, 연금, 수당을 착취해 노인들을 경제적으로 곤란에 빠지게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동이 재정적 학대의 전형이라 볼 수 있다. 방임의 개념이 포함된 재정적 학대는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유지하거나 회복하는데 필요한 자원이나 자금이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노인이 일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 속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서적 학대의 개념을 노인에 심리적 고통을 야기하는 비언어적 행동과 노인에게 사회적인 격려 등을 제공하지 않아 심리적으로 방임을 야기하는 행위 모두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리고 노인을 때리거나, 밀치고, 꼬집고, 강제로 구금 하는 등과 같은 구타 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드물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방임의 개념 속에 포함되는 소극적인 의미의 신체적 학대 내용만을 포함하여 신체적 학대로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재정적 학대는 노인의 소득 또는 자원을 부양자가 오용하는 것과 일정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 않아 재정적으로 방임을 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하여 개념을 정의 하고자 하였다.

제2절. 노인 학대의 원인

노인학대의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한가지의 적용 이론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히키와 더글라스(Hickey, & Douglass)는¹⁹⁾ 여러 이론적 관점들을 혼합하여 일생주기모델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모델 역시 단지 제안일 뿐이지 이에 대한 실증적인 접근은 시도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 이론적 틀을 구체화시키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국내외에서 이론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지지 않은 이유도 있겠지만 이처럼 학대의 원인에 접근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론이 각기 다르고 각 이론의 독특성으로 인하여 지엽적인 원인 분석에 그치고 있으므로 해서 관련 연구에 있어서도 불일치되는 측면이 나타나 노인학대의 원인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노인학대가 발생하기까지는 가족의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들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가정 내 노인 학대의 원인을 하나의 이유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즉, 노인학대의 사례는 각각의 경우가 독특하고, 원인이 중복되어 있는 복합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이 노인학대 연구의 기초가 된다.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의 주된 발생원인을 타타로(Tataro: 1994)는²⁰⁾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첫째로 부양자의 스트레스 원인론이다.

고령자가 정신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이거나 부양자 자신이 개인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때 특히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콜 중독 등으로 부양자는 부양에 부담을 느끼게 된다. 나아가 부양하는 일에 대해 지식이 부족하여 부양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할 경우이거나 다른 가족 구성

19) Hickey, T., & Douglass(1981). 전게서

20) Tataro, T., Kuzmeskus L., Duckhorn E, Bivens L, Thomas C,

Gertig J, Jay K., Hartley A., Rust K., Croos J. (1998)

www.aoa.gov.

원 으로부터 지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부양이 더욱 더 힘들게 된다. 다시 말하면 학대는 부양자의 스트레스와 욕구불만이 그 밖의 요소 즉, 부양자의 내면의 문제 즉 상황대처 능력의 낮음, 정서적인 문제, 실업 등에 외적문제(고령자의 정신 또는 신체적 장애, 금전적인 부담, 가족이나 지역 사회로부터의 지원의 격리 등)가 어우러진 결과로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둘째로, 열악한 고령자의 건강 상태 원인론이다. 일반적으로 건강상태가 나쁜 고령자가 건강한 고령자 보다 학대받는 경향이 많다. 이와 비슷한 결과는 아동학대의 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령자의 장애정도가 악화되어 부양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깊어지게 되는 상황 하에서 학대가 일어나기 쉽다.

셋째로, 폭력순환 원인론이다.

폭력이란 후천적으로 배우는 것이고, 어떤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 가는 것이다. '어떤 가족을 두고 다른 가족보다 폭력적이 되기 쉽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동학대 연구자들은 아동을 학대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실제 그들이 어렸을 때 부모나 부양자로부터 학대당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대자 개인적인 문제론이다.

연구자들은 노인을 학대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피해자의 성인 자녀)은 학대를 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무엇인가 개인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밝혔다. 양친을 학대하는 성인 자녀들은 주로 정신장애나 정서장애, 알코올 중독, 약물중독, 금전적 곤란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자녀들은 종종 노인들의 원조(금전, 주택)에 의존하게 되고 결국은 사람들을 학대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부모에 의존하고 있는 성인 자녀들에 의한 노인학대는 실제로 자기 자신의 한심스러움에 대한 분풀이 적 반응이라는 설도 있다. 가정 내 학대 행사자의 약 30%가 피 학대자의 성인자녀라는 점에서 주목해야 할 원인이다.

이상과 같이 노인학대의 주된 원인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학대 발생원인 요소들은 가정 내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는 이유를 이해하는 기초적 틀을 제공해 준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인과관계설에 관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타타로(Tataro)의 연구에 의하면 노인학대자의 약 2/3 는 가족 들임이 밝혀졌다.²¹⁾ 아동학대의 자료에서도 70%의 학대 행사자가 피해자의 가족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볼 때 노인학대는 아동학대와 함께 가정 내 폭력 또는 가족 내 대립 이라고 볼 수 있다. 쉐스톡과 링(Sengstok and Ling)은 노인 학대자의 50%가 자녀이고, 아들의 경우에는 직접 학대 쪽의 경우가 많으며 딸은 간접적인 학대로 심리적, 정서적 무시의 학대가 더 많다고 했다. 이는 부모가 아들보다는 딸에게 정서적, 심리적 으로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았으며, 학대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가족 내의 여러 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경험했다고 말하고 있다. 미국 25주에서 보고된 데이터에 의한 타타로 (Tataro)의 연구에 의하면 가정 내 노인학대 피해자의 약 2/3은 여성이며 학대, 방임 또는 착취도 고령자의 67.8%가 여성이라고 하였으며 후기 고령자의 경우가 학대를 더욱 많이 받고 있고, 80세 이상의 고령자가 1991년 가정 내 학대 피해자의 2/5이상을 차지 하고 다고 조사되었으며, 피해자의 평균 연령도는 78.8세로 나타났다.

라우와 코스버그(Lau and Cosberg, 1979)는²²⁾ 학대 피해자의 75% 이상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갖고 있다고 했다. 첸(Chen) 등은 교육수준이 낮고 수입이 적은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고 수입이 많은 사람보다 학대를 더 받는다고 했 으며, 슈타인메츠(Steinmetz, 1987)는²³⁾ 학대 피해자들은 학대사실 그 자체보다도 학대사실이 밝혀져 자기 집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야한다는 사실을 더욱 두려워하고 있으며, 본인의 자녀들이 죄

21) 상계서

22) Lau, E. E, & Kosberg, J. I.(1979) 'Abuse of the elderly by informal care providers'. *aging vol.302*, pp. 10-15

23) Steinmetz, S, J,(1990) 'Elder abuse; myth and reality'. *Family reallionships in later life*, pp. 173-192

의식을 갖고 사회적으로 낙인 되는 것을 원치 않고 있다고 했다.

위와 같은 연구들을 통해서 볼 때 노인 학대에 대한 공통적인 특성은 노인학대의 주 대상은 고령의 여자 노인이 많으며, 정신적, 신체적, 경제적으로 의존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다. 학대 가해는 주로 노인을 돌보는 가족에 의해 일어나고 있으며, 빈곤, 과도한 수발부담, 알코올과 마약 등 개인적 병리 등의 원인이 주요 학대 요인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 내 학대를 밝히는데 있어서 좀더 통합된 접근법이 필요하다 라는 인식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학대의 원인 역시 관련된 원인을 가능한 모두 포괄하면서, 동시에 실질적인 경험연구가 가능한 모델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긴다. 예를 들어 노인 개인의 특성,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의 특성, 노인과 부양자의 상호작용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사회경제적인 맥락 속에서 파악될 때만이 노인학대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통합적인 노인학대 모델로 '사회 심리적 모델'(Burgess & Conger: 1978) 또는 '생태학적 통합모델'(Belsky: 1980), 사회 상호작용적 모델(Milver: 1990)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아동 학대를 설명하기 위해 개발된 것이기는 하지만, 노인학대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에도 마찬가지로 응용될 수 있는 모델로 노인학대의 문제를 연구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이 모델들 있는 사회적 상호작용들의 중요성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학대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도록 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강조한 모델이다. 필립스(. Phillips: 1986)는 사회 상호 작용적 모델의 한 형태로 사회 상황적 모델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가해자의 특성, 가족 폭력의 역사, 사회적 고립, 부양으로 인한 소모 등 구조적인 요인들과 경제적, 환경적 요인들 그리고 취약한 노인들이 학대를 받을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여러 상황적 요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캠프(Kemp, 1998)는²⁴⁾ 가족 내 학대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생태학적 또는 체계적 접근법

24) Kemp, A.(1998) 「Abuse in the family: An introduction」.

이 유용하다는 제안을 하였다. 캠프는 폭력이 발생하는 즉각적 상황, 그 가족들의 상황, 이웃들과 사회적 연결망, 그리고 폭력을 발생시키는 문화적 가치관 등이 영향을 주어 가정 폭력이 발생한다고 봄으로써 학대의 원인을 개인적 차원, 가족 체계적 차원, 사회적·문화적 차원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노인학대의 원인을 노인 자신이나 부양자의 개인적인 특성 그리고 가족 체계의 특성에 초점을 두는 동시에 더 큰 사회적인 맥락에서 그 같은 문제가 초래된 본질적인 영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루게 되어 노인 자신만의 특성이나 또는 부양자만의 특성만 살펴보는 단편적인 접근방법 보다는 좀 더 거시적으로 노인학대의 원인을 규명해 줄 수 있을 것이다.

노인학대의 문제는 한 가정의 특수 상황의 제현이 아니라 그 나라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맥락에서 그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수립해야만 효과적인 노인학대 방지책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제3절 선행연구

1980년대에 미국사회에서는 이제 학대로 희생되는 연령층은 아동이 아닌 자녀에게 의존하고 있는 노부모가 될 것이며, 노부모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들은 바로 노부모 부양책임을 맡고 있는 그들의 자녀들 일 것이다. 라는 주장이 생겨났다.(Steinmetz: 1987)

25) 이는 노인인구의 급증이나 부양부담의 가중으로 인하여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들 중 간과할 수 없는 문제가 가정 폭력의 한 가지 유형인 노인학대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다.

우리보다 인구의 노령화 속도가 빠르고 노인학대의 문제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서구에서는 1970년대 말 이래로 여러 측면에서 이 문제의 본질을 탐색하고자 하는 노력을 진행하여 왔다.²⁶⁾

25) Steinmetz, S. K.(1987) 「The elderly: Victims and deviants」. Ohio Univ. Pres.

26) Daniels, R. S., Baumhover, L. A., Clark-Daniels, C. L.(1989)

「Physicians' mandatory reporting of elder abuse」. 『The Gerontologist』,

미국과 그 외 다른 서구 문화권에서는 지역사회 조사를 통해 65세 이상 되는 노인의 3%에서 6% 정도가 학대 또는 방임을 경험하고 있고, 가해자는 보통 그들의 자녀 또는 그 외 가족구성원에 의한 것으로 밝히고 있다. 최근 미 하원의 노인문제 보고서에서 미국 노인 20명 중 1명꼴로 학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노인들이 가족들로부터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무관심 속에 방치될 뿐만 아니라 손쉽게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미국 내에서 가족 내의 노인문제가 이제 사회적인 범죄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이 드러났다.²⁷⁾(Cox: 1996)

유럽의 경우는 1970년대 말부터 노인학대에 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였다. 연구결과에서 노인학대 피해자들은 대개 스트레스가 높고, 성인자녀와 함께 살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무능력한 고립된 여성이며, 연령이 매우 높은 것(75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요인이 과연 정확한 판단인가에 대한 의심이 여전히 많은 연구가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경험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탐색이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되어 왔다. (pillemer & finkelhor: 1988)²⁸⁾ 그 동안 우리 사회에서 연구된 노인학대 원인의 접근방법은 개인을 중심으로 한 개별적 특성에 한정하여 보는 경향이 높았다. 즉 노인과 관련된 인구학적 특성 및 의존성 등의 변인이 노인학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는 부양자와 관련된 인구학적 특성 및 부양스트레스 등의 변인이 노인학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전길양·송현애: 1997)가 조사되었다. 그러나 노인학대는 개별적으로 피해자 중심이나 가해자 중심의 개인적 특성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가족 및 환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kemp, 1998)²⁹⁾ 이러한 개별적 접근방법은 일반인들의 시각을 편

vol29, no.3, pp. 321-327

27) Cox, H. G.(1996) Later life-The realities of aging. Prentice

HaLL.

28) Pillemer, K., & Finkelhor.(1988) 「The prevalence of elder abuse:

A random sample survey」. 『The Gerontologist』, vo. 28, no.1 pp.

51-57

협화시킬 수 있다. 즉 노인의 의존성이 학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같은 수준의 의존성을 갖고 있는 모든 노인이 같은 수준의 학대를 받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노인학대의 원인을 노인 또는 부양자의 개인적 특성에만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기보다는 이들의 주변 환경 역시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노인을 둘러싼 환경이 학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 가족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인 학대에 대한 해결책과 예방책을 모색하는 미래의 경험적 연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의 원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을 바탕으로 한 원인규명 작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노인개인의 특성과 노인을 부양하는 부양자의 특성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노인학대의 원인을 접근하는 방식을 통해 부양자의 노부모에 대한 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치료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고 본다.

서구에서 1970년대부터 시작된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 및 연구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1990년도에 들어서서야 조금씩 이에 대한 인지를 시작하였고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시도된 노인학대 연구는 약 20여 편으로 이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및 국외 연구를 종합적으로 탐색한 문헌적 고찰을 들 수 있다. (윤진, 1994; 김한곤, 1994; 한동회.김정옥, 1994; 이해영, 1996; 성향숙, 1997; 김태현.한은주, 1997). 첫째로 이들 문헌에서는 노인학대의 개념 정의에 따른 문제라든가, 기존의 연구경향 그리고 이론에 대한 소개들이 제시되었다. 둘째,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그리고 실태와 원인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형사정책연구원, 1995; 한동회.김정옥, 1995; 김현수, 1997; 이영숙, 1997; 전길양. 송현애, 1997; 김미경, 1998; 김재엽, 1998). 이들의 연구 결과 우리나라 역시 어느 정도 노인학대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

29)상세서

타나 일종의 사회적 문제로서 이에 대한 관심이 절실한 것으로 피력되었고, 대개 나이가 많고, 육체적으로 불편하거나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고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한 고립된 여자노인들이 학대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대다수의 노인들은 자신의 무능력과 같은 자기 탓으로 학대가 발생한다고 느끼고 있었으며, 적극적으로 환경 변화를 일으킬만한 대처방안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양자와 일반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노인을 학대하는 원인 및 태도를 밝히고자 한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의 연구결과 노인학대 상황은 노인의 의존성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긴 하지만, 노인이 부정적인 행동 통제기술 등을 많이 사용하여 부양자와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더욱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노인의 의존성이나 부정적인 행동 등과 같은 요인으로 인해 부양자의 스트레스가 높아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부양자는 노부모에게 학대를 한다. 라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어서 학대가 부양자보다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일로 언급되고 있다. 넷째, 이미 학대를 경험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학대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히고자 한 연구를 들 수 있다.³⁰⁾

이들의 연구결과 학대의 원인은 단 하나의 요인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다양한 요인, 즉 개인적, 가족적, 사회 문화적, 사회 정책적 요인이 복합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소수의 피해자를 중심으로 한 회고에 의해 조사된 것이므로 일반화시키는 데는 무리가 따른다고 본다. 다섯 번째는 그외 기타 연구로 전화상담사례를 분석한 연구(서혜경, 1995 김효정 2001) 및 신문기사를 발췌하여 분석한 연구(박준기 1998)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학회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연구들 역시 학대에 대한 정의나 연구방법, 표집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연구결과들을 통합하거나,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즉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노인학대가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고, 가족 내에서 누가 노인을 학대하며, 왜 학대하는지 그리고 학대는 노

30) 한동희, 김정옥(1995) 「가족학논집 제7권」, pp. 185-209

인 자신의 문제 때문인지, 자녀의 문제 때문인지 아니면 쌍방 간의 문제 때문인지 하는 의문들은 학대의 또 다른 형태들이 다른 형태의 상황이나 개인들과 연관되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위험 요인인지 단편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 만큼 노인학대는 복합적이고 다 차원적인 문제들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문화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 없어 관련요인을 명확하게 제시하기 힘들뿐 만 아니라 연구마다 그 요인에 대해 서로 다른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서 서구의 연구자들이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대로 학대경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려고 한다면 우선적으로 더 정교한 개념적 모델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른 가족학대 영역 (예; 배우자 학대, 아동학대 등)에 비하여 노인학대 영역은 훨씬 덜 연구가 된 분야이긴 하지만, 지금까지 행해진 연구들을 종합하자면 노인학대의 원인과 관련된 요인으로

첫째 가해자의 개인적 특성으로 경로사상의 퇴조로 인한 세대 간의 차이나 자신의 행복추구를 우선으로 하는 이기심으로 부모도 제 삼자로 인식하는 풍조의 만연과 부모들의 과보호로 인한 남성들의 여성화로 며느리의 발언권 강화에 의한 갈등 등의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로 상호 세대 간의 전이, 셋째 피해자의 의존성, 넷째 외적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그 외 사회적 고립요인이 위기요인으로 포함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 중에는 이론적으로나 방법론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대책과 예방차원에 실질적으로 이용될만한 일반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는 연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 결과들 간에 불일치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관련된 선행연구들의 일반적 경향을 보면, 먼저 노인학대, 노인홀대, 방임 등의 용어들이 혼용되고, 동일한 현상에 대한 정의에 있어서 현격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관련 연구들과의 비교 및 연구 간의 연속성을 위한 타당성 있는 연구결과의 누적이 불가능하고, 관련된 실태조사 결과가 일치되지 않는 문제가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으므로 개념적인 정의를 규정짓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또한 학대의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서구에서 사용된 이론으로는 정신병리학적 이론 사회학습이론, 사회교환이론, 상황적 스트레스이론, 상징적 상호작용이론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주 문제점은 이론을 통한 가설 또는 설명들이 경험적 탐색에 근거한 것이 아니며, 또한 이론적 특성상 피해자, 가해자, 가족, 또는 사회의 각 측면만을 지엽적으로 다룸으로써 노인학대에 대한 부분적인 원인분석에 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론들을 적용한 연구의 결과들은 사후적인 임상치료나 예방적인 교육프로그램에 효율적으로 반영시키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더군다나 우리나라의 연구에서는 이론에 대한 소개 정도의 연구³¹⁾만 있을 뿐이지, 이론을 통한 경험적 검증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서구의 연구에서 제한점으로 제시되고 있는 이론적 관점을 통합함으로써 포괄적인 노인학대의 원인 설명을 하기 위한 이론 설정으로는 생태학의 이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생태학적 접근은 인간의 행동을 개인, 가족, 지역, 사회 등과 같은 환경과 결부시켜 체계론적인 관점을 강조하는 이론으로, 복잡 다양하다 할 수 있는 노인 학대의 문제가 초래된 본질적인 영향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룰 수 있으리라 본다. 사실 가족 내의 일을 가족 안에서만 해결하고자 하는 의식이 특히 강한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탐색을 한다는 일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떠나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함께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하는 연구조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구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노인학대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제한점을 갖는다는 이론적 측면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적 이론으로써 인간발달 생태학 이론을 적용한 캠프(kemp:1998)의 생태학적 접근방법을 적용하고 있는 연구자도 있다.³²⁾ 캠프(kemp:1998)의 환경 세분화 체계에 따라

31) 한동희, 김정옥(1995) 「가족학논집 제7권」, pp. 185-209

32) 한은주, 최배영. (1997)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본

연구된 선행연구에서는 노인학대의 원인들을 분류하여 부양자의 노인학대 원인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연구모형을 구성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을 종합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을 하였으며, 노인학대의 예방 및 개입의 탐색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연구에 주요 의의를 두고 있다. 노인학대 문제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 복지적 개입의 필요성 또한 절실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에 관련된 법 제도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형법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의 한 영역으로 노인 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이다.³³⁾ 또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도 매우 광범위하고 합의되어 있지 않아 학대 대상노인의 범위가 어느 범위인지, 어느 정도의 행위를 학대의 범주 속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의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화하기가 어렵고 노인학대 방지법과 같은 독립된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한편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적 가치관, 가족주의, 효 사상, 유교주의 등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현시점에서 당사자 및 피해자의 신고, 고발 등 노인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법 제정은 오히려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우선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 부문을 강화해야 하며 사회적 서비스를 통한 상담 및 가족 수발자에 대한 교육, 간병수당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부양 스트레스 및 학대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상호작용적 스트레스가 부양관계에서 폭력을 유발하는 가장 큰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결과에 의하면, 노인에게 심각한 장애가 있을수록, 노인에게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일수록, 노인이 분열성 행동을 보일수록, 부양자의 자아 존중감이 낮을수록, 부양자의 연령이 낮을수록,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을수록, 그리고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5권 제2호,

pp. 373-383

33) 김미혜, 이선희(1998) 「노인학대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사회 복지, 보호」, pp. 87-110.

양자가 노인의 배우자인 경우와 노인과 부양자가 한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에 부양자가 폭력을 행사하고 싶은 두려움을 갖거나 실질적인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인학대의 원인이 단순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남자노인보다는 여자노인이, 연령이 높을수록,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의존성이 높을수록, 부양자와 같은 공간에 거주할수록, 그리고 부양자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많을수록 노인학대가 더욱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학대에 대한 용어자체도 아직 완전히 합의된 정의가 없으며 선행연구나 조사도 거의 마찬가지로 실정이다.

다른 가정폭력문제인 아동학대나 배우자 학대와 비교해 볼 때에도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는 통일된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구미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1970년대 말부터 노인학대에 관한 보고와 연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학대방지책이 제도화되어 학대예방과 학대발생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비해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도 노인들의 기본권리를 조장하고 나약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차원의 근본적인 복지대책의 방법으로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해나가야만 한다

199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의 노인학대에 관한 최근 연구들을 분석해 보면,³⁴⁾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전통적인 가족윤리 때문에 가정 내에 은폐되기 쉬운 노인학대에 대해서 노인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학대상황 속에서 어떤 원조요청태도를 가질 수 있는지를 측정하였다.³⁵⁾ 새로운 복지문제로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고찰'에서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에 대한 미국과 영국의 사회적 대책을 소개하고, 상담사례와 신문보도를 통한 우리나라의 노인학대의 실상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다.³⁶⁾ '노인학대 측정과 개입을 위한 문헌적 고찰'

34) 최해경,(1993)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논문집 제22집」, pp. 273-286

35) 이해영(1996) 「새로운 복지문제로서의 노인학대에 관한 고찰」,

「노인복지정책연구」, pp. 185-209 pp. 185-209

에서 노인학대의 개념과 양상, 학대와 관련된 일반적 특성, 외국의 노인학대 개입전략에 대한 소개와, 노인학대 측정도구 개발의 필요성과 그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있다.³⁷⁾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학대의 경험과 원조 요청 경험을 조사 하였는데, 그 결과 학대 경험률은 전체의 43.8% 이었으며, 학대 유형은 심리적 학대가 35.0%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경제적 학대 22% 학대 15.0% 정도였다고 조사하였다.³⁸⁾ '노인학대의 실태조사연구'라는 논문에서 무인가 노인수용시설의 50세 이상의 입소자를 대상으로, 질문지 법과 개별면접법을 사용하여 입소하기 전의 노인학대의 실태와 요인을 조사하였는데, 정서적 학대 24.8%, 경제적 학대 18.6%, 신체적 학대 8.5%의 순으로 나타났다.³⁹⁾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에서 기혼 성인남녀와 6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과 경험의 실태와, 그들의 노인학대 경험에 미치는 각 변인들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성인 남녀와 노인 모두 주로 심리적인 측면에서의 학대를 노인 학대로 인식 하였다⁴⁰⁾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에서 청주시 거주자로서 경로당을 이용하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노인학대의 차이, 노인학대와 노인의 심리적인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 하였다⁴¹⁾ '노인학대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일 연구'에서, 노인을 담당하는 직원 338인을 대상으로 해서 노인 학대 측정도구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한 논문이다. 조

36) 김태현, 한은주(1997) 「노인학대 측정과 개입을 위한 문헌적

고찰」, 『가족학논집 제7권』, pp. 51-73

37) 김현수(1997)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38) 반형욱(1995) 「노인학대의 실태조사연구」, pp.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39) 전길량, 송현애(1997) 전개서

40) 김미경(1995)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청주시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41) 김미혜, 이선이(1998) 「노인학대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사회복지 제136호』, pp. 87-110

사결과 5개 유형의 노인학대를 측정할 수 있는 학대척도로서 최종 확정된 문항은, 심리·정서적 학대 16개 문항, 자기방임 11개 문항, 신체적 학대 9개 문항, 재정적 학대 6개 문항, 방임 6개 문항이었다⁴²⁾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20세 이상의 성인 587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는데, 조사 결과, 응답자들의 58.6%는 노인들이 적절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반면 2.2%만이 존경을 받고 있다고 인지하고 있었다. 노인학대의 유형 중 방치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언어적 학대와 경제적 착취의 순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실제로 목격한 노인학대의 유형은, 언어적 학대가 50.0%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는 방치 29.8%, 경제적 착취 16.3%의 순이었다.⁴³⁾ '한국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1961년부터 1997년까지 37년 간 1개의 일간지에 신문기사로 보도된 노인학대 사례를 조사하여 노인학대의 유형과 내용, 발생원인과 결과 등을 조사하고 연대별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그 결과로 연 학대유형의 변화는 신체적 학대와 심리·정서적 학대의 발생률은 감소한 반면, 자기학대와 경제적 학대, 부양거부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존속범죄를 통한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존속범죄를 노인학대로 보고 존속범죄의 실태와 특성의 분석을 통해 직계가족에 의한 노인학대의 실상을 규명하고 있다. 조사는 1993년부터 1997년 말까지 5년 동안 5대 주요 중앙 일간지에 보도된 존속범죄에 관한 270건의 기사를 대상으로 하여 가해자 관련사항, 피해자 관련사항, 범행관련사항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피해자의 특성은 여성보다 남성이 약간 많았으며, 여성노인이 존속유기 당하는 비율은 남성에 비해 3배나 되었다. 가해자의 특성은 남성이 여성의 8.3배로 압도적으로 많으며, 30대와 무직의 비율이 높았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동거하는 경우가 별거하는 경우보다 4배나 높게 나타났으며, 범행동기는 피해자 관련동기(부모에 대한 불만, 금전문제)가 가장 많

42) 김한권(1994)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경향과 과제」, 『인문연구』, 제15권 2호 pp. 209-227
 43) 박준기. 상계서

았다. 가해자가 50대 이후인 경우는 부모부양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⁴⁴⁾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노인과 동거하면서 노인을 수발하고 있는 여성 부양자 (며느리, 딸, 손녀)를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조사연구로서, 의존성이 높고 부정적 행동 통제기술을 사용하는 노인이 학대받을 가능성이 크며, 동거가족수가 적어서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가족스트레스가 많은 부양자일수록 노인을 학대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⁴⁵⁾ '부양자의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요인'에서 (시)부모를 부양하고 있는 중년기의 기혼 남녀 200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연구를 수행하였다. 조사결과, 피부양자에 대한 심리적 학대 및 방임의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원인은 쌍방 간의 이해 부족과 경제적 능력의 부족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냈고 노인학대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는 부양스트레스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 연구'에서 전국 6개 대도시의 12개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 총865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전체 응답노인 중 8.2%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 및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특성별로는 고령층, 저 학력층, 무 배우자,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 가구에서 높은 학대 경험율을 보였다. 학대유형별 경험비율에 있어서는 언어 심리적 학대가 가장 높았고, 신체적 학대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와 노부모와의 관계는 아들이 42.6% , 며느리가 44.7% 이었으며, 평소 관계는 34.0%가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가해자 중 성장 시 가정폭력을 목격한 비율은 28.6%이었으며, 실제 가해자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경우는 20.0%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이유로는 경제적 문제가 39.5% 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다음은 성격차이 (22.1%)로 나타났다.⁴⁶⁾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목

44) 이선이(1998) 전개서

45) 이성희, 한은주(1995) 「부양자의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요인」

「한국노년학」, 제18권 3호 pp. 123-141

46) 서윤,(1998) 존속범죄를 통한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격실태에 관한 연구에서 전국의 재가노인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 총 230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하였다. 노인학대에 대한인지는 전체 응답자의 93.4%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대유형 중 신체적 학대를 가장 심한 학대로, 정서적 학대를 가장 덜 심한 학대로 인지하고 있으며, 학대의 심각성에 있어서는 정서적 학대가 가장 심각하고 신체적 학대가 가장 덜 심각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75.2%가 노인학대 목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며, 학대유형 중에서는 방임에 대한 목격이 가장 많고, 신체적 학대에 대한 목격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주로 아들과 며느리이고, 93.7%가 직계 가족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60.7%가 동거하고 있었다. 학대의 원인은 부양자의 부양스트레스(60.7%)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이 경제적인 문제(58.4%)였다. 피해 노인과 가해자와의 가족관계는 96.5%가 좋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수준은 74.0%가 [하]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피해자로부터 이전에 학대를 당한 비율은 39.4%로 세대 간의 학대의 전이가 꽤 높은 편이며 학대를 당한 피해자의 반응은 [그냥 참는다]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4절. 외국의 노인학대 방지 대응방안

1. 미국의 대응방안

1) 노인학대 유형

현재 미국의 노인학대는 보편적으로 두 개의 광범위한 범주와 다수의 특수한 유형으로 구분된다. 광범위한 두 개 범주는 가정의 노인학대(Domestic Elder Abuse)와 시설노인 학대(institutional Elder Abuse)이다. 노인학대는 피해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성인자녀, 배우자, 친지, 친구 등의 보호제공자가 행하는 학대이며 시설학대는 노인에게 비용을 받고 보호를 제공하는 요양원 등의 시설에서 발행한다. 현재 이 두 범주에 덧붙여 자기방임은 독립적인 노인이 자기 자신을 위한 보호제공에 실

『노인복지연구』 제11권 1호

폐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보편적인 유형의 학대로 간주된다.

노인국과 국립 노인학대센터는 신체적 학대, 성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물질적 착취, 방임을 일반적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방임(58.5%), 신체적 학대(15.7%), 재정적, 물질적 학대(12.3%)의 순으로 보고하였다. 심리, 정서적 학대와 성 학대는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2)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사회보장법과 노인복지법은 미국 노인학대의 근간이 되는 제도이다. 사회보장법(1975)은 주 정부가 사회서비스 프로그램 강화를 목적으로 고안한 것으로 이 법률 하에서 노인학대 개입을 위한 법률이 발전되기 시작하여 1992년 42개 주가, 현재는 거의 모든 주가 강제적 보고 법령을 갖게 되었다. 미국 노인복지법(1965)은 미국 보건복지부에 소속된 노인국(Administration on Aging)설립의 기반이 되었다. 개정된 노인복지법은 강제성은 없으나 노인학대에 관한 포괄적 정의를 제공하고 단순한 법안에 노인학대 예방, 교육, 서비스제공 등 구체적인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예산지원 조항을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노인학대 방지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국희, 2001).

1987년 의회가 프로그램을 위하여 5백만 달러를 인가하기 전까지 연방정부의 재원조달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1992년 노인학대 예방을 다루는 Title VII가 노인복지법에 가세하며 현재까지 약 \$450만가 해마다 노인학대 방지를 위하여 할당되며 대략 비슷한 수준의 재원이 장기 보호 옴브즈먼 프로그램에 의해서 지원된다.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법으로는 성인보호 서비스법(Adult Protective Services Law), 형법(Criminal Law),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Violence Law), 시설학대법(Institutional Abuse Law), 장기 보호옴브즈먼 프로그램(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 노인학대법(Elder Abuse Laws), 후견인 보호법(Guardian ship & Gon servators hip Statutes) 등을 들 수 있다.

3) 대처조직 및 기구

노인국(Administration on Aging)은 노인과 그 부양자들을 위한 제도를 발전시키고 계획하며 지역사회와 가정 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일한 연방정부 차원의 기관이다. 취약하거나 위협에 처한 노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원조 및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Administration on Aging, 2001)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접촉점으로 기능하며 대중교육, 주 정부와 지역 서비스 조정, 원조 제공,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주로 한다. 국립노인학대센터(NCEA)는 보고서를 발달시키고 배포하며 국제회의, 교육훈련 워크숍 등의 다양한 전문적 활동에 참여한다. 현재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는 국가규모의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를 완수한 것이다. NCEA는 공공기관과 사립기관의 자원이 된다. 전문가, 서비스 제공자, 개인과 가족에게 예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과 훈련, 기술적 지원을 제공한다. 민간차원의 중요한 기구의 하나인 노인학대 예방위원회(National Committee For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NCPEA)는 연구자, 임상가, 교육자, 대변자들이 취약한 노인들을 위해 연합한 단체로 노인학대 예방과 대처, 연구 사업 활동을 하고 있다.

4) 프로그램 및 서비스

두 개 범주의 예방과 개입활동이 연방정부 노력에서 탄생되었다. 가정 내 학대와 방임은 성인보호 서비스 프로그램(Adult Protective Service)에서 조사되어지는 반면 시설에서 발생한 노인학대는 장기보호 옴브즈먼 프로그램(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책임 하에 진행된다. (Kemp: 1998)

미국 성인보호 서비스 프로그램은 주 정부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이나 전반적 과정은 유사하게 나타난다. 성인보호서비스는 사례 접수 후 조사를 위한 사회복지사를 파견하고 노인보호에 요구되는 개입정도를 결정한다. 일단 사례가 확인되면 사정이 진행된다. 기준화된 문서, 절차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정작업은 다양하나 업무용 표준화된 지침서는 관련 기관과 의료센터에서 활용되며 환자 차트의 제검토, 의료전문가의 의견, 환자와의 면담, 환자력 등으로 구성된다. 학대의 수, 징후, 증상의 확인, 기능적 사

정의 틀, 면접 주제와 질문 조항, 사회복지 개입계획과 목표를 발전시키는 프레임을 제공한다. 개입은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각 사례는 차별화되고 개별화된다. 만일 아동이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되면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할 수 있는 아동보호서비스직원과 달리 성인보호서비스직원은 동등한 권한을 갖지 못한다. 아동학대 분야와 같이 노인학대를 처리할 수 있는 분리된 법정체계는 부재하며 만일 노인이 직원의 개입을 거절하면 노인의 결정이 인정된다.

성인보호 서비스의 강조점은 노인이 가능한 독립적 삶을 유지하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이런 가능한 최소 한정적인 서비스 제공은 성인보호서비스 및 직원의 권위를 제한하나 원조 가능한 다양한 자원을 소유한다. 차이는 있으나 각 주에서 제공되는 보편적인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다(Kemp, 1998;NCPEA, 2001).

먼저 정신건강사정서비스(Mental Health Assessment)가 있다. 정신건강사정서비스에서 정확한 사정과 평가는 학대 피해노인의 기본적 욕구, 서비스 수혜 결정, 법적 절차 진행, 보호능력 여부 등의 결정 근거가 된다. 또한 가해자의 정신상태 평가는 치료와 위험의 정도 결정에 영향을 준다.

다른 하나로 상담(Counseling)이 있다 상담으로는 개인, 집단 상담이 있다. 자원과 선택에 관한 피해자교육, 부정과 수치심 감소, 안전계획, 원조지원체계수립, 외상스트레스 경감, 학대를 유발하는 갈등과 긴장감소 등을 위한 가족상담에 목적을 둔다.

또 다른 서비스로 법적 지원(Legal Assistance)이 있다. 노인복지법은 60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갖는다. 학대 시 법적 서비스는 자산회복소송,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 제한요구, 후견인, 가해자 기소 등을 원조한다.

그 다음으로는 원조서비스(Support Service)가 있다. 요리, 청소, 식사, 시장보기 등의 가사원조 서비스, 노인의 독립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원조, 가정의료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단기 보호 프로그램은 보호제공자들에게 휴식 및 휴가를 제공하여 장기보호를 지속하도록 원조한다. 이외에도 노인가정에 직접 식사

를 배달하는 프로그램(Meals-on-Wheels)이 있다. 우에 방문서비스, 전화 복구 프로그램, 재정학대 피해자를 위한 금전관리 원조 프로그램 등이 제공된다.

가정폭력프로그램(Domestic Violence Program)은 심각한 가정폭력의 경우 사법권은 학대피해자의 동조의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소한다. 판사는 강제적 치료와 구속 외에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시키는 보호관찰, 보호명령과 같은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을 갖는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위한 상담, 위기 전화상담, 자조집단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 다른 것으로 가해자프로그램(Service for Abusers)이 있다. 학대 가해자를 위한 서비스 중개자 및 중재인으로 기능하며 약물남용 프로그램, 고용 서비스, 수송, 상담, 교육적 서비스 등의 프로그램에 의뢰한다.

비자발적 서비스(Involuntary Service)는 노인이 자신을 위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리인 혹은 후견인 직무를 수행할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 노인에게서 시민권리는 제거되고 소송후견인 등 공평한 입장의 제 3자가 노인의 최대 관심사를 파악하고 법정에 보고하도록 지명되어 사건관리의 권리를 부여받는다.

정신적 장애로 자신이나 타인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경우 개입대상은 자기방임의 정의에 부합하는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다. 심한 우울증과 같은 정신건강상태는 정신치료를 정당화하고 노인을 정신병동에 수용한다. 이런 경우의 법적 절차는 엄격한 사법기준에 의해 통제된다.

게이트키퍼 프로그램(Gate Keeper Program)은 방임노인을 대상으로 위험에 처한 노인 조기발견, 아웃리치원조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며 노인의 독립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원조가 목표이다.

일상생활에서 노인과 접촉이 가능한 은행원, 전화국직원, 계량기 검침원, 세관 감정관, 아파트 관리인, 약사 등이 노인학대의 징후 발견을 위하여 활동한다, 프로그램 팀은 사례관리자, 간호사, 심리학자, 담당의사 등의 다목적 팀으로 구성된다. 시설입소

를 원치 않는 노인들에게 영양, 의료처치, 자기보호, 비용지불원조, 운송수단, 가족과 친지와의 접촉, 조정과 사례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외에 방임, 자기방임 방지프로그램(Stopping Neglect & Self-neglect), 사례관리(case Management), 가해자 목격원조서비스(Victim Witness Assistance Service)등이 제공된다.

시설학대 개입은 장기보호 옴브즈만 프로그램(Long-Term Care Ombudsman Program)하에서 진행된다. 각 주는 지방과 지역 수준의 유보수 혹은 자원봉사자 후견인을 갖는다. 시설학대를 조사하는 장기보호조사관 직위는 연방정부 법령에 의거하나 프로그램운영 기금은 주 정부가 받는다. 장기보호조사관은 개입 능력이 제한된다. 이들은 시설학대에 대한 실제적 강제권위는 없으나 노인과 시설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조정하는 기능을 한다. 이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최선책은 법적 권위를 가지고 학대를 조사하고 보다 진전된 법적 절차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에 의뢰하는 일이다. 직원의 범죄행위는 강제 기소된다.

2. 캐나다의 대응방안

1)노인학대 유형

캐나다는 광범위한 지리적 여건과 정치적 영향으로 미국과는 다른 지역적 제도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보편적 노인학대 개념이 정확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나 Health Canada는 노인학대를 '노인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재정적 해를 가져오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체적 학대는 폭력, 거친 신체적 처우, 성적 착취, 음식물 공급의 실패, 적절한 개인적, 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로 규정하며 심리적 학대는 언어적 학대, 사회적 고립, 예정 공급의 실패, 노인 삶의 의사결정 과정의 기회제한이나 거절 등이다. 재정적 학대는 노인 자산의 착취와 사기를 포함한다. 1999년 Ontario Legislative Assembly는 노인학대에 약물학대(Medication abuse),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침해, 유기와 자기방임을 추가하였다(Ontario Human Right Commission, 2000)

노인학대 예방기구(Elder Abuse Prevention)는 학대를 신체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심리적 학대, 유기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EAP, 2001) 또한 가족폭력 예방기구(The Prevention of Family Violence)는 노인학대를 '노인에게 해를 입히는 고의적 행동 혹은 행위의 결핍'으로 규정하고 유형으로 신체적 학대, 성학대, 심리적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을 들고 있다.

2) 대처 조직 및 기구

연방정부 차원에서 노인학대에 대응하는 조직으로 국립노인자문위원회(The National Advisory Council on Aging:NACA)는 1980년에 설립되어 보건국(Minister of Health)의 캐나다 전국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NACA :2001)

또한 National Clearinghouse on Family Violence(NCFV)는 가정 내 폭력과 관련된 광범위한 제반 업무를 담당하며 법적, 제도적 차원의 학대를 담당한다. 영리 연합단체 중 하나인 노인학대예방기구(Elder Abuse Prevention/EAP)는 학대를 예방하고 취약한 학대 노인들을 원조하는 중요한 조직이다. 이 단체는 노인학대를 개념규정하고 그 유형을 일반화하여 대중에게 인식시키며 전문적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제공한다.

캐나다는 비교적 노인문제를 다루는 전문적인 기구가 잘 정비되어 있고 대중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노인학대 문제 대책과 지원을 하고 있다.

지역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갖고 발전해 온 법적, 제도적 체계 하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 또한 지역마다 상이하게 나타난다. 연방정부 차원에서 The national Clearinghouse on Family Violence(NCFV)는 폭력 피해성인을 위한 서비스와 프로그램 280종류를 지역적으로 명시하여 제공하며 이는 기관과 서비스 타입에 의하여 분류된다. 노인학대와 방임에 관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도 이 카테고리 내에서 제공되어진다.(Health Canada, 1999). 가족과 사회 서비스(Family and Social Service)가 가족

폭력예방(The Prevention of Family violence) 사무소에 배포하는 가이드라인에는 학대피해노인을 위한 정보와 지원서비스 자원이 명시된다. 자원으로는 지역보건소(Local Health Unit), 노인센터(Senior Citizens Center), 가족 및 지역사회 원조서비스(Family and Community Support Services or Local Social Services Agencies), 가족, 사회 서비스 지역사무소(Family and Social Service District Office), 정신보건센터(Mental Health Clinic), 공공후견인 사무소(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등이 있다.

캐나다 주요지역들의 학대예방기구(EAP)에서 제공되는 중심적인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Ontario Toronto의 Guide of Elder abuse Prevention and Support project([http:// www.libray. utoronto.ca/www/aging / onpea_projects/home](http://www.libray.utoronto.ca/www/aging/onpea_projects/home))

이 프로그램은 노인학대 문제를 조사하는 노인학대 위원회부터 개인학대피해노인에게 이르는 광범위한 지원과 원조를 제공하며 각 지역사회의 학대피해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접근점이 된다. 노인대변센터(Advocacy Center for the Elderly)는 특수한 법적 클리닉으로 학대피해노인에게 법적 지원을 제공한다. 지역보호접근센터(Community Care Access Center/CCAC)는 온타리오 지역 내의 가능한 서비스를 학대피해 노인에게 연결하는 기능을 한다. 모든 접근 가능한 정보와 서비스, 프로그램의 리스트를 제공하며 서비스 선택을 돕는 전문가가 활동한다. 온타리오 주 가족 서비스(Family Service Ontario)는 전 지역의 47개 산하기관을 가진 조직이다. 이 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상담과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경찰(Ontario Provincial Police)은 취약한 노인학대의 위험을 발견한 성인이 접촉을 고려할 수 있는 장소 중 하나이다. 지역사회 경찰관은 학대보고를 조사하며 범법적 학대를 기소할 수 있다. 공공후견인 사무소(Office of the Public Guardian and Trustee)는 무능한 학대 피해자의 상황을 조사하는 기능을 한다. 피해자/목격 원조 프로그램(The

Victim/Witness Assistance Program)은 피해자와 범죄 목격자를 다양한 방법으로 원조한다. 법정 절차정보를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를 연결해주며 위기 시 법적 조언과 정보 등을 제공한다. 보건국 장기요양보호소(Ontario Ministry of Health, Long-Term Care Division)는 장기요양보호시설의 학대피해노인을 원조하며 위기전화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Woman's Directorate나 Victim Assistance Online은 위기전화를 운영하며 학대피해 여성을 위한 쉼터, 강간치료센터, 성폭력센터 등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East Bay의 Alameda County와 Contra Costa County 프로그램과 서비스

이 지역의 EAP는 15년 간 노인학대를 지원해 온 비영리 기관이다. 노인학대의 개념, 유형을 규정하고 학대징후 및 징표 등을 배포하여 대중들의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확고히 하며 학대발생 시 필요한 조치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학대피해자와 그 관련자들에게 서비스를 정규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NonEmergency Service)와 응급서비스(Emergency Service)로 나누어 제공한다. 정규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노인정보(Senior Information)에서는 노인학대에 관한 질문과 염려 등의 정보를 제공하며 성인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는 학대피해노인이나 의존적 성인에 관한 보고를 받는다. 시설에서 노인학대가 발생하면 노인학대 예방 옴브즈먼(Elder Abuse Prevention Ombudsman)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법정조사사무국(Court Investigators Office), 지역 변호인부서(District Attorney, Consumer Fraud Department), 노인법률서비스(Senior Legal Service)에서는 법정절차 서비스를 지원한다. Echo와 Elder Angel은 재정적 학대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응급서비스로 경찰보호(Police Protection)와 성인보호서비스(Adult Protective Service)는 위기상황의 학대에 대처한다. 이외에도 On-Site Medical help, Transport to Medical Facility가 응급의료 처치를 제공하며 자살예방서비스, 법적 상담, 심리평가 등이

있다.

3)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

캐나다는 노인인구학적 변화에 부응하여 법과 제도가 끊임없이 변모하여 왔다. 연방법(Federal Law) 즉 캐나다 권리장전과 자유법(Canadian Chapter of Right and Freedoms States)은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의 권리 및 자유와 안전을 보장하며 특히 권리나 결정 능력을 상실할 위험에 처한 취약한 노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노인들은 이 법에 근거하여 학대피해를 당할 경우 기본적 보호를 받게 된다(Health Canada, 1996).

형법(The Criminal Code)에 의거하여 노인들은 살인, 상해 등의 폭력에서 보호받는다. 구체적으로 이 법에 근거하여 노인들은 신체적 학대, 폭력, 성 학대, 재정적 학대, 방임 등은 보호받는다.

현재의 성인보호제도는 Newfoundland에서는 방임 성인 복지법(Neglected Adults Welfare act/1973), New Brunswick에서는 가족 서비스법(Family Services Act and The Amendment to the Act/1980), Prince Edward Island에서는 성인보호법(Adult Protection Act), Ontario에서는 성인 보호법(Adult Guardianship Act Part 3) 내에서 학대를 다룬다. 지역적인 특성을 갖은 다양한 성인보호제도 하에서 학대나 방임 피해 성인의 후견인(Guardianship)이 효력을 가지며 강제적 혹은 자발적 보고 체계(Mandatory or Voluntary Reporting)가 성립되어진다(Health Canada, 1995).

3.일본의 대응방안

1)노인학대 유형

고령자 안전보호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보고서-고령자 학대실태에 관한 조사연구(1996년/평성 9년)는 학대를 크게 타인에 의한 노인학대로 신체적 폭력에 의한 학대, 성 학대, 심리적 장애를 유발하는 학대, 경제적 학대, 그리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간호 등을 방임, 거부, 태만 하는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에서는 자기학대와 자기방임은 제외되었다. 광의의 노인학대는 가정 내

학대, 시설 내 학대, 자기방임이나 자학 등 크게 3범주로 분류한다. 이 중 가정 내 학대는 '배우자, 자녀, 형제, 친구, 보호제공자 등 노인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노인의 자택 혹은 보호제공자의 거주지에서 행하여지는 학대'로 정의하고 있다.

노인학대예방센터의 위기전화상담인 지원부서(Support Line)에서는 일본에서 빈번한 학대의 유형을 신체적 학대, 정서/심리적 학대, 금전적/물질적 학대, 성 학대, 방임, 감금 등으로 분류한다.

2) 대처 조직 및 기구

일본에는 노인학대를 보고할 책임이 존재하지 않으며 노인학대 문제를 다루는 시설 등을 구비한 특수조직이나 기관이 설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 1994년 Society for the Study of Elder Abuse

(SSEA)는 노인학대를 예방할 분명한 사회적 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고 이런 조사에 근거하여 SSEA는 일본노인학대 예방센터를 설립하고 자발적 전화상담서비스 Help Line을 시작하였다. (Yamada, 1999). 노인학대예방센터(Japan Elder Abuse Prevention Center)는 1995년(평성8년) '노인학대 프로젝트' 연구 과제에서 창안하여 설립되어 노인학대를 주제로 연구 활동을 실시하고 노인학대에 관한 상담, 연수 등의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며 노인학대에 대응하는 위기라인인 전화상담(Support Line)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3) 법적, 제도적 지원 체계

일본 노인학대의 법적 대응을 전제로 하는 제도적, 법적 체계를 살펴보면 근간이 되는 법은 민법과 노인복지법이다. 민법은 기본적으로 노인의 재정적 학대의 근거가 되어진다. 예를 들면 추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에 대해 '학대' 등을 한 경우 피상속인은 추정상속인을 가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다(892조). 아동복지법이 '학대' 용어를 사용한 반면 노인복지법에서는 '학대'의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 제정에서 선구적 시도인 큐우슈우 사회복지 협의회, 연합회의 노인복지법 시안(1961년)은

부양자가 고령자를 학대한 경우 도지사가 가정재판소의 승인을 얻어 고령자를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는 취지의 규정을 포함하였다.

최근 개호보호제도의 검토과정에서 학대에 대한 대응이 이슈가 되었다. '고령자 간호', '자립 시스템 보고서-새로운 고령자 간호시스템 구축(1994)'에서는 간호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고령자와 서비스제공기관과의 계약에 의한 것이 적당함을 인정하나 가족에 의한 간호 포기, 학대의 경우 행정기관이 긴급 보호조치를 할 필요가 있음을 명시해 이는 개호 보험법 시행령 제 20조에 의한 노인복지법의 일부개정 형태로 법문화되었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노인복지법 10조 4항 제1목은 어쩔 수 없이 개호보험법이 규정하는 서비스 이용 곤란이 인정될 경우 시, 읍, 면은 거택에서 간호 조치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동법 2조 제 1항에서는 '요보호 노인이 피할 수 없는 이유에 의하여 개호보험법이 규정하는 노인 시설에의 입소가 곤란한 경우 특별 양로노인 홈에 입소조치 되나'라고 개정되었다. 이 개정에서 보면 학대라는 직접적 표현이 '피할 수 없는 사유로 개호보험법이 규정하는 사회자원을 이용하는 일(예를 들면 입소 등)이 곤란'하다는 용어로 쓰이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는 학대를 직접 대상으로 하고 가족에 의한 노인학대의 법적 대책이 될 수 있는 법제도의 추진이 모색 중이다.

4) 프로그램 및 서비스

노인학대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일본 노인과 간호자의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광범위한 사회자원 내에서 제공된다.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종류는 재택서비스와 시설 서비스로 나뉘어진다. 재택서비스로는 보건소와 시 보건 센터, 고령자 통합 상담센터(110번지), 복지사무소, 가정 봉사원 서비스, 24시간 대응 봉사원, 단기보호 서비스, 주간/밤 보호 서비스, 재택 간호 지원 센터, 고령자 재택서비스 센터, 방문간호서비스, 노인성 치매질환센터 등이 있다. 시설 서비스로는 노인보건시설, 특별 양호 홈, 유료 노인 홈, 실비 노인 홈, 보호소, 무료 노인 홈 등이 있으며 이외 경제적 지원이 제공된다. 이 중 학대노인과 가족들이 활용 가능

한 사회자원을 살펴보면, 노인권리옹호센터/ 재산상담기관(제 2 동경 변호사협회, 고령자 재산관리센터)/ 노인 및 가족 상담기관 이 있다.

노인과 가족이 접근 가능한 프로그램으로는 노인학대 예방지원센터의 지원부서(Support Line)와 일본 고령자학대방지센터의 원조부서(Help Line)/노인 성추행 방지프로그램(Silver Harassment 110번지) /I & I Net(오사카 후견인 지원센터)/ 생명의 전화(24시간 대응)와 치매노인 가족회/ 응급 노인보호시설로 고령자 긴급 상담센터가 있다.

4. 영국의 대응방안

1)노인학대 유형

Action on Elder Abuse(AEA)는 노인학대를 '신뢰가 기대되는 관계에서 발생하는 노인에게 상해나 고통을 일으키는 단일한 혹은 반복적인 행동이나 적절한 행위의 결핍'으로 정의하고 다섯 가지 유형을 제시하였다.

신체적 학대는 때리기, 치기, 밀기, 구속, 과다 혹은 부족한 양의 의약품 공급 등을 말하며 심리적 학대는 소리치기, 욕하기, 놀라게 하기, 나무라기, 무시하기, 굴욕감을 갖게 하기 등이다.

재정적 학대는 불법적으로 노인의 자산을 활용하거나 착취하는 것을 의미하며 성 학대는 노인의 동의 없이 성 관계에 관여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를 말하며 방임은 음식물, 난방, 의복, 필요한 의약품 등을 박탈하거나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한다.

Action for Older People, Social Service의 나우슬리(Knowsley)는 Action on Elder Abuse의 정의를 인용하고 유형을 신체적 학대, 심리적 학대, 성학대, 물질적 학대, 정서적 학대로 분류하고 있다.

2)대처 조직 및 기구

Action on Elder Abuse(AEA)는 영국 내의 노인학대에 대응하는 유일한 국가 조직이다. AEA는 노인학대를 모든 노인이 안전하게, 공포, 방임, 태만, 고통, 착취 없는 삶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학대를 규정하고 유형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AEA는 무료 위기 전화상담(Help Line)을 운영하며 컨퍼런스 등 학술사업과 정기간행물 등 출판사업을 통한 노인학대 예방과 대응에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3)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영국의 노인학대 관련법은 예방과 보호 두 가지로 분류된다. 예방과 관련된 법으로 보건서비스와 공공보건법(The Health Services and public Health Act/1968)은 노인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지역적 권위를 가지며 The NHS and Community Care Act(1990)는 욕구사정 수행을 요구한다. Northern Ireland와 Scotland 지역의 노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책임은 보건사회서비스 법령(The health and Social Services Order/1972)과 사회복지법(The Social Work Act/1968)에 명시되어 있다. 취약한 노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다목적기관 정책과 법률의 발전과 실행의 길잡이로 No secrets(England), In Safe Hands(Wales)가 2000년 실행되었다. 보호자법(The Carers Recognition and Services Act/1995)은 보호자 사정을 요구하였고, Northern Ireland Boards & Trust가 직접 보호자 사정을 실시한다.

정신보건법(The Mental Health Act/1984/ England and Wales), Mental Health Order(1986/ Northern Ireland), Mental Health Act(1984/ Scotland) 등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노인과 학대피해노인에게 적용된다.

국가원조법(The National Assistance Act/1948)의 47항은 심각한 위험으로 가정에서 분리되어야하는 노인에게 법적 권위를 부여한다.

가족법(The Family Law Act/1996/ England and Wales), 가정폭력법(The Family Homes and Domestic Violence Order/1998/ Northern Ireland), The Matrimonial Homes (Family Protection) Act/1981/Scotland) 등이 학대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해자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The Court of Protection(England & Wales), High Court and The Office of Care and Protection(Northern Ireland),

Curator Bonis(Scotland) 등은 정신적으로 무능한 노인의 재정적 학대에 관련된다. 또한 사회보장국(Department of Social Security)의 변호대리인은 재정적 노인학대에 유용한 근거가 된다. 시설과 관련된 법으로 The Registered Homes Act(1984), The Nursing Homes Regulations(1984/ England and Wales), The Registered Homes Order(1992/ Northern Ireland), The Nursing Homes Registration Act(1993), The Social Work Act(1968) 등이 시설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제도이다.

4) 프로그램 및 서비스

영국의 국가 기관 중심의 노인학대에 원조 가능한 자원,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ction on Elder Abuse는 노인학대와 관련된 조직과 개인에게 광범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다. 또한 Elder Abuse Response를 운영하여 노인이 학대를 당한 경우 비밀이 보장되는 정보와 지원을 제공한다.

Age Concern England는 학대에 관한 광범위한 정보와 권고를 제공하며 Age Concern 하의 지역 단체들의 명단을 전화번호부에 기록하여 제공한다.

Alzheimer's Society는 Alzheimer's 병과 관련된 권고와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사무소를 운영한다.

국가보호자연합(Carers National Association)은 보호제공자에게 충고와 정보를 제공한 수전문가에 의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Help the Aged는 노인, 가족, 부양자에게 전화를 통한 전국적 규모의 무료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Public Concern at Work는 노인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법적 조언을 제공하는 센터이다.

The Residents and Relatives Association은 가정 내 보호자, 장기요양 병원의 노인, 노인의 친인척들에게서 제공한다. 특히 'Listening Ear'는 문제에 대한 특별한 충고와 제안을 제공한다.

Women's Aid Help Line은 여성노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며 특히 성 학대 문제에 요구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역원조 자원자들인 Community Nurse, General Practitioner, Health Visitor, Police Community Safety Unit, Social Services Department, Local Age Concern Group 등은 학대 피해노인들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 지역적 원조를 제공한다.

위기전화 Help Line은 AEA에서 운영하는 영국의 유일한 전국적 무료 학대상담전화이다. 전화상담은 비밀이 보장되며 영어를 비롯한 5개 국어로 정보와 정서적 원조를 제공한다. 경험 있는 직원이나 자원봉사자가 근무하며 전화상담 연합(Telephone Helplines Association)에 의해 인가된다.

사회와 문화 그리고 사회와 문화를 지배하는 가치관에 따라 노인학대인지가 달라지고 이는 학대의 정의, 개념규정에 영향을 준다. 예를 들면 한 문화권의 노인학대는 보다 명백하게 나타나나 다른 문화권에서 학대는 노출되기 어려운 미묘한 문제로 인식된다. 이는 학대가 사회의 문화, 기대, 그리고 노인과 노인가족의 상황 등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Pablo, & Braun, 1997)

넓게는 사회와 문화권을 지배하는 노인 차별주의의 정도, 만연하는 폭력의 정도, 대중의 폭력 인지정도 등이 영향을 미치며 가족관계, 부양 기대감 등도 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다. 학대를 인지하는 개인의 인식은 또한 학대 행동과 상황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궁극적으로 학대의 노출과 원조요청에 영향을 준다. 결국 학대의 노출이 비교적 쉬운 사회에서는 그 대처방안 또한 발전하기 쉬운 반면 보다 은폐 가능성이 높고 드러나기 어려운 문화권 내에서는 대처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Moon, 2000). 결과적으로 노인과 가족을 포함하는 대중의 학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 이를 근거로 발전하는 대처방안은 각 국의 사회와 문화에 따라 상이한 차이를 보이며 다양하게 나타난다.

비교적 일찍 사회보장제도가 발전한 미국은 노인학대 문제도 비교적 이른 시기에 사회문제화 되었고 다양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어 가장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 다양한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하여 학대피해노인과 가해자를 위한 원

조체제로 대응하고 있으나 가정 내 학대에 비하여 시설학대는 정도와 규모를 추정하기 어려우며 대응전략 또한 미비한 상태로 나타난다. 캐나다는 지역적 특성과 지리적 여건으로 인하여 연방 정부차원의 대응보다는 지역적 차원의 특성을 갖춘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프로그램과 서비스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역적으로 안정된 서비스 지원체계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학대에 대처하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일본의 경우 학대를 중심으로 하는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 프로그램 및 서비스는 명확치 않으나 전반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노인복지 원조 시스템을 통하여 효과적으로 학대문제에 대응하는 전략을 유지하며 그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있는 현실로 비추어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영국은 단일 정부기구를 통하여 효과적인 학대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외국의 대응방안을 근거로 한국 노인학대 대처방안에 관한 제언을 제시해 보면 첫째, 한국 노인학대의 실태파악이 시급하다. 각 국은 전국 규모의 실태조사를 시도하여 학대의 규모와 정도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노인학대를 비교적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전국 규모의 조사나 연구가 시도되지 못한 상황이며 따라서 실태파악이 불가능한 현실이다. 산발적인 조사를 담합하여 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한국에서의 노인학대 개념이 정의된다면 전문적 개입이 용이하게 될 것이다. 둘째, 법적, 제도적 지원체계마련이 불가피하다. 서구 여러 나라에서 이미 노인학대는 기본권을 보장받는 넓은 범주의 학대로 인지되고 있으며 각 국은 현재 학대를 직접대상으로 하는 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한국의 현재 상황에서는 분출하고 있는 학대문제에 대응하는 기존법 적용의 한계점을 평가하는 노력을 필두로 우리상황에 적절한 노인학대 관련 법안마련의 기초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학대를 전담할 기구와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 선진 각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혹은 필요한 경우 주 정부 차원의 학대 대처기구를 설립하였고 민간차원의 기구를 설립하여 학대문제

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점차적으로 학대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합의하는 시점에 있다. 학대를 전담할 정부차원의 조직설립을 위한 보다 조직화된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괄목할 만한 대응방안은 전문적 프로그램과 서비스의 제공이다. 공통적으로 여러 나라는 노인학대 문제를 범범이나 형사법적 영역으로 국한 짓기보다는 노인과 가해자 모두가 사회적 원조를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접근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의 영역으로 수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국은 기존 복지 시스템을 이용하여 학대노인과 가족을 포함한 대중들에게 전문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광범위하게 진안을 모색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여겨진다. 이는 학대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나 가족문제로 보지 않고 사회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은 보다 거시적 차원의 대처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으나 시행되고 있는 노인복지 전문 프로그램과 서비스 네트워크를 통하여 시급한 학대문제에 대처하는 방구조적 문제로 인식하여 학대를 예방하고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하여서는 우선 노인학대가 한국 사회복지의 관심 있는 영역으로 자리 잡아야 할 것을 시사한다.

노인관련 전문가,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학대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면 서구 여러 나라의 학대 대처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한국실정에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진전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제3장. 노인학대방지시책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노인학대 사례연구 분석

노인학대의 원인에는 학대를 유발시키는 가해자가 있고 관련요인으로 가해자와 노인과의 상호작용요인, 가정환경요인, 사회적 문화요인을 들 수 있고 구체적으로는 노인의 개인적 특성으로서 노인의 성격적 특성, 정신장애, 알콜 중독, 무기력 등을 들 수 있고 장애 또는 질병, 치매 등으로 의존적인 생활환경 때문에 학대가 유발되기 쉽다. 또한 가해자의 성격장애, 정서장애, 정신장애, 알콜 중독 등은 학대를 쉽게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부양자의 신체적, 정신적 부양스트레스는 부양 미숙, 부양 정신 결여 등에 의하여 학대가 일어난다. 가정의 경제문제 또한 성격의 이질성 등에 의한 가족관계의 불화, 재산문제 등도 학대를 유발시키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⁴⁷⁾ 학대받고 자라 온 학대환경도 노인에게 대한 가해를 하게 되는 경향이 많다. 윤리관의 결핍, 가치관의 변화, 사회보장제도의 결핍, 노인들의 자활능력의 부족 등도 또한 노인학대를 발생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노인학대의 원인을 더욱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학대사례의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노인학대 사례연구 논문 조사를 통한 각종 조사를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피해자 성별 및 연령

박준기(1998)의 조사결과⁴⁸⁾ 60대가 46.3% 70대가 29.4%이었으며 80세 이상이 17%로 평균연령은 70세 이었다. 조예조, 김승권, 김유경(1999)논문에서는 피해노인이 65~74세가 74.6% 75세 이상의 고령층으로 72세이었고 피해노인 평균이 남자73.7세 여자71.5세로 평균연령이 높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최바울

47) 아내나 아동의 학대에서 어린시절 학대를 경험했거나 부모가 학대하는 것을 보았던 경험이 학대행위를 하게한다는 것을

폭력유희이론이라고 함
48) 박준기, 상계서

라 수녀 (2001)가 전화상담을 통하여 조사한 결과는 70세 미만은 19% 70세 이상은 62.4%를 후기 고령자가 학대받을 확률이 높다는 것이 조사되었다. 김미진(2001)의 조사에서는 65~70세 노인이 28%를 가장 많았으며 미국의 경우 75이상의 연령이 피해자인데 반하여 연령이 5~10년 정도 낮았다. 김효정(2001)의 연구에서는 피해 받는 여성의 연령이 70대 미만의 60대 이상 노인이 32.4%인데 반하여 70세 이상의 노인이 67.6%로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외국의 영향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다.

2) 학대자와 학대유형

박준기 논문에서는 학대자의 성별분포는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높은 73.5%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연령별로는 30대 (35.9%) 20대, 40대 순이었으며 미국과 비교하여 볼 때 가해자 연령이 미국의 40대, 50대인데 반하여 한국은 20대 30대가 많다는 점에서 가치관에 대한 사회적 감각이 부족한 결과가 아니가 생각된다.

피해자 관계로도 자녀에 의해서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52.4%로 동방예의지국이라는 전통적인 사회의 개념이 붕괴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김효정(2001)논문에서는 장남 및 며느리가 학대를 가하는 경우가 64.7%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기타 자녀가 15.3%로 나타났다.

조예조, 김승권, 김유경(1998)연구에서는 가해자로 아들과 며느리가 69.5%를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되었고 딸의 경우도 16%로 사회가 심각한 이상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김미진(2001)의 연구에서도 아들과 며느리에 의한 학대가 가장 많았다고 조사되었다. 학대유형도 언어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치, 정서적 학대, 신체적 학대 등 다양한 분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비단 단순한 학대가 누구냐의 여부를 떠나서 국가가 사회의 윤리를 바로 세우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아들과 며느리에 의한 학대사례를 살펴보면 '어머니가 오빠 나와 살고 있는데 걸음을 걸으셨던 분이 자리에 누워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고 뼈만 앙상하다. 드시는 것이 거의 없고 냄새도 진동하는 등 방치상태에 보인다. 어머니를 데려오길 원하

지만 오빠가 허락하지 않고 완강히 거부하고 있으며, 어머니 또한 오빠가 두려워 거처를 옮기고 싶다는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 도움도 청해 보았지만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라 모시고 나오지 못하였다. 현재는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있다: '아들이 밖의 일이 안되면 무조건 클라이언트를 때리고 폭언을 하여 참고 살다가 도저히 함께 살수 없어 방을 얻어 따로 살고 있다. 하지만 생활비(자녀가 있어 생활보호대상자도 되지 못함)가 없어 살기가 너무 힘든데 아들은 체면을 깎고 돌아다닌다고 집으로 돌아오기를 강요하고 있다. 클라이언트는 아직도 아들에 대한 공포가 심해 다시는 들어가고 싶지 않지만 살기가 어려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다.'

위의 두 사례에서 보면 노인은 일단 자녀로부터 분리되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싶어 하지만 갈 곳이 없다. 그러나 갈 곳이 없다. 학대받는 피해노인이 피하는 장소로는 특정한 장소에 갈 곳이 없어 배회하는 경우, 그 다음은 따로 사는 자녀나 노인회관으로 조사됐다. 학대받는 것에 대한 일시 쉼터의 부재가 다시금 학대발생 장소로 노인들을 옮겨놓은 악순환을 겪고 있다.

3) 생활수준, 건강상태

김미진(2000)의 논문에서는 학대받는 노인이 14%가 생활수준이 높지 못하였고 높은 경우가 28.9%이어서 생활수준과 학대는 관련이 없었고 건강이 나쁜 노인이 37%로 질병을 갖고 있는 노인의 학대의 분포도가 높은 것이 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조예조, 김승권, 김유경(1999)의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는 아들에게 학대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즉 가해자와의 동거에서 오는 물리적인 접촉은 신체적 학대 발생의 직접원인이 되지 않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김효정(2001)은 건강상태가 나쁜 경우가 25%로 학대를 많이 받는 원인이 되고 있음이 조사되었다. 생활수준의 저하 및 노인의 건강상태에 의한 학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정부나 사회단체가 막연히 문제라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복지차원에서 경제적, 재정적 지원 대책을 수립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의료시설의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만 한다.

4) 언어학대

김효정 논문에서는 언어학대에 대한 조사결과 27.8%로 상당히 많은 학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내용으로는 욕하기였고 모욕, 창피주기, 고함지르기 순이었다. 김미진 조사연구에서는 언어학대가 9.6%이었고 학대횟수도 주 2,3회가 가장 많았으며 적대적 언어, 폭언, 경멸적 언어 순이었다.

그 사례를 살펴보면 '65세 할머니는 사별하고 외아들 내외와 함께 살고 있다가 중풍으로 쓰러지자 며느리는 할머니에게 말도 잘 안하고 심지어 모욕적인 말을 일삼아 보호시설에 들어가려고 한다. 또 하나의 사례로 '손자녀를 돌봄으로써 가사역할의 일부를 담당해 왔던 피해노인이 육체적인 질병을 얻어 손자를 돌 볼 수 없게 되자 노인에게 냉담하게 대함으로써 그 집에 살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가 갖는 가장 큰 맹점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또는 가치의 척도를 물질로 재려는 황금만능주의이다. 정부가 부르짖는 진정한 민주 복지국가가 되기 위해서 물질적인 지원 못지않게 국가의 정신적인 철학을 세우는 길이며 약자를 돌봄으로서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다. 그러한 정신적인 가치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배려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도록 하는 정부적 차원과 민간차원의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법적으로도 노인에 대한 언어학대 문제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와 같은 법적인 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5)방임. 방치

박준기 연구에서는⁴⁹⁾ 방임방치가 11%로 아들이 주 행위자이며 딸은 부양거부를 며느리는 부양거부와 방임의 주행사자로 분석하였다. 김효정 논문에서는 부양거부 방임이 44.2%로 노인 학대에서 가장 성행하는 학대임이 증명되었다.

내용 면에서는 무관심, 냉담이 가장 많았고 부양하지 않으려

49)상계서

고 하는 것이 다음 순위였다. 조예조, 김승권, 김유경 논문에서도⁵⁰⁾ 방임이 15.8%를 차지하였다. 방임은 노인을 부양하는 사람이 노인에게 필요한 보살핌을 제공하지 않거나 보살핌이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 최바올라 수녀 연구에서는 방치가 29.9%로 비교적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서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6) 신체적 학대

박준기 논문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58.1%로 노인학대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

신체적 학대에서는 아들이 49.5%로 가장 높고 며느리, 손자녀 순이었다. 노인의 신체적 학대에서 아들이 주 행사자이며 며느리가 부 행사자이고 손자녀는 조부모에게 신체적 학대를 주로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효정 논문에서는 신체적 학대가 17.3%이었고 그중 때리기가 가장 높았고 머리채 잡아당기기, 물건을 던지기 순이었다. 조예조, 김승권, 김유경 연구에서는 신체적 학대 폭력이 0.8%밖에 되지 않았다. 아마도 이 통계는 노인복지 회관 이용자의 특수상황의 경우이어서 정확한 데이터로서는 가치가 부족하였고 점점 그 백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예견된다. 김미진의 조사에서는 서초구라는 한정된 지역을 조사한 결과 0.7%라는 낮은 빈도를 얻을 수 있었는데 비교적 경제력이 풍부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낮은 데이터의 분포라고 생각된다. 최 바올라 수녀의 논문에서 분석한 통계에 의하면 신체적 학대가 20.1%를 차지하고 있어서 신체적 학대에 관한 통계는 지역별로 너무 상이하여 데이터의 신빙성이 적어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조사가 더 필요한 항목이다.

신체적 학대는 복지정책의 가장 해를 끼치는 암적인 문제로 이에 대한 방지대책에 대한 연구는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복지국가로 한발 나아가기 위해서는 노인의 신체적 학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더욱 강력한 법적체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아울러 시민단체나 교육기관의 적

50) 조예조, 김승권, 김유경, 상계서

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정부도 강력한 의지 천명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7) 경제적 착취

박준기 연구는 경제적 학대가 10.8%라고 조사하였다.

경제적 학대에는 학대의 경제적 요인, 심리적 요인, 학대자 자신의 문제를 포함하였다. 경제적 학대의 결과도 사망 또는 상해가 되는 만큼 중요한 문제이다. 경제적 학대의 경우는 남자가 60%로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김효정 논문에서는 10.7%로 돈을 요구한다든지 노인의 소득을 가로챌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활능력이 없는 노인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현수(1997)는 노인학대의 실제연구에서 경제적 착취가 22.5%라고 조사하였다.

조애조, 김승권, 김유경 연구에서는 경제적 착취가 22.2%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고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가장 큰 이유로 자녀이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학대를 참고 살고 있었다. 최바올라 수녀의 논문에서 보면 경제적 학대는 14.3%로 조사되었다. 김미진의 논문에서 보면 경제적 착취가 10.4%로 조사하였고 그 중에 용돈문제가 가장 높은 응답을 기록하고 있었고 재산을 착취당한 경우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였다. 경제적 착취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규명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으로 사례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 및 대책 강구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일차적으로 경제적 착취에 대한 개념의 인식 제고에 대한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한 계몽과 교육이 함께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18세 이상이 되면 스스로 자립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고 부모의 재산 상속으로 편하게 살 수 있다는 사회분위기를 바꿀 수 있도록 세법도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제2절. 노인학대 방지 시책의 문제점

노인문제에 관해서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희생으로 자녀가 자립해가는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가 무너지고 국제경제의 향방에 따라 흔들리는 국가경제로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아감에 따라, 또한 나만 잘 살아보자는 개인주의의 팽배 앞에 우리가 함께 살아 가자라는 공동체 의식의 종언으로써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인을 들 수 있다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일류학교, 일류대학에 보내야 한다는 일류병 그리고 이를 부채질하는 어머니의 과도한 치맛바람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오로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겨야 한다는 것을 배웠고 또한 일류대학 출신 고위 정부관료 들에 의한 강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우월주의가 합리적 논리성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의 전통적인 윤리의 붕괴가 노인의 문제를 심각하게 하는 동기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제는 노인학대 문제가 심각해 졌는데도 아직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의 노인복지 정책이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서 또한 노인의 경제, 건강, 소외에 대한 사회적 제도 및 인식의 미비로 학대를 더욱 증가시키고 있으며 이에 개인주의 이데올로기가 촉진제가 되고 있다. 특히 노인학대는 가족 간의 갈등의 골이 깊은 경우가 많음을 사례를 통해 느끼면서 정부의 지원뿐만 아니라 사회적 도움체계가 형성되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노인학대에 대한 불모지인 우리나라 현실과 자신의 학대 사실을 사회적으로 공개하기를 꺼리는 사회 문화적 배경을 전제로 하여 볼 때 노인학대 수준은 현재 연구되어 있는 통계의 몇 배가 되리라고 추산할 수 있다.

노인학대 방지지책의 문제점은 법률상, 제도상, 시설적인 면 또는 전문 인력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

1) 법률상의 문제

노인학대에 관련된 법·제도는 다만 형법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폭력의 한 영역으로 노인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즉 노인학대에 관련된

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에 그 심각성이 있다.

노인학대의 대상도 법률적으로 명확하지 않다. 문제가 될 수 있는 항목이 먼저 노인 대상이 누구에게 한정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동거 가족원에 한정시킬 것인가, 비동거 가족원까지 가정폭력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또한 법적으로 인정된 가족관계에 한정할 것인가? 사실혼의 관계를 포함할 것인가? 법적으로 가족 관계를 종료한 전 배우자의 부모까지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두 번째로 노인학대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범위이다. 신체적 위해 행위에 국한할 것인가? 신체적 폭력일지라도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행위까지 포함할 것인가를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사이의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그러면 가족구성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하는 법률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신체적 폭력일지라도 어디까지를 폭력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을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법률조문을 분석해 보면 노인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행위는 형법 제257조, 제 258조, 제260조, 261조에 명시되어 있고 노인의 유기, 학대의 경우는 형법 제271조, 제273조, 제274 조에 명시되어 있다. 가정폭력의 대상인 노부모를 체포 또는 구금하는 경우는 형법 제276조, 제 279조, 제278조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가정 폭력 의 대상인 노인 에 대하여 협박하는 경우는 형법 제283조, 제284조 노인의 명예 를 훼손하는 경우와 모욕을 하는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308조, 제309 조, 제311조 등을 적용하고 있다. 노인의 신체, 주거, 관리 하는 구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 색하는 경우는 형법 제321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노인의 권

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형법 제 324조 또한 노인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는 형법 제350조, 노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훼손 또는 은닉 등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경우는 형법 제366조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조문에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이 법률적인 지식을 갖고 권리를 행사하고 비합법적인 절차에 대해서 저항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노인학대 방지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세번째로 노인학대 방지법 제정의 검토를 면밀하게 연구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정 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내학대에 관한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법안의 제정에 앞서 노인학대를 초래할 수 있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기본적인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예방대책에 대한 배려 없이 처벌규정만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학대는 앞으로 더욱 심하게 은폐될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성이, 1998) 또한 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담시설이나 보호시설 등도 모두 아내학대에 관련된 것으로 노인학대 피해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는 노인복지의 측면에서 노인복지 관련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인복지의 다양한 제도 및 서비스 적 측면에서 함께 고려되어 져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 미국의 경우에는 1978년 클라우드 페퍼(Claud Pepper)가 매년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노인들이 노인학대로 희생된다는 내용을 밝힘으로써 노인학대의 문제가 사회화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각 주 정부들은 노인학대를 의무적으로 보고하게 하는 법률을 요구하게 되었다. 그 후 노인학대의 통보를 의무화한 법률이 많은 주에 제정되어 학대, 방임 혹은 이용당할 위험

이 높은 노인을 원조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회기관들도 증가하였다.⁵¹⁾

노인학대의 정의는 각 주마다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법령은 시민으로서 통보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하는 보증이 있으며, 이들 통보법령의 주목적은 실제 노인보호를 하고 있는 서비스기관에 법률을 실행하는 권한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국의 노인복지법은 제11조 취약노인보호 프로그램 내 노인학대, 유기, 악용 예방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에는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취급되어 많은 조사가 실시된 90년대 이후 국가적 수준의 법률은 없고 지방자치체가 자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1992년 조사에 의하면, 조사에 응한 101개의 자치체중 노인학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소정의 절차를 갖고 실시하고 있는 자치체는 15%이다.⁵²⁾

케톤 주의 예를 보면, 케톤 주 사회서비스부는 1993년 성인학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학대사실을 발견 및 파악하여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설정하였다. 여기에서는 지방자치체가 중심이 되어 조사를 행하고 이를 근거로 긴급히 피 학대자를 보호하는 구체적 방법과 개별적 대응이 결정되며, 각 단계에서 필요한 담당자 및 관련 인적자원을 예시 하였다. 특히 중심적 기능을 하는 것은 '케이스 회의'로 학대 보고 시 72시간 내에 조직되어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외에 민간단체(Action on Elder Abuse)가 1993년에 창설되어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계몽활동, 교육, 조사, 정보를 제고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노인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 이유는 미국 및 영국과 같이 대상 노인의 복지를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및 인프

51) Blakely, Bernard E. & David C. Morris(1972). 'Public perceptions of and responses to elder mistreatment in middletown.', *Journal of Elder Abuse & Neglect, vol.4, no.3* pp. 19-37

52) 이해영(1996) 「새로운 복지문제로서의 노인학대에 대한 고찰」,

「노인복지정책연구, no.3」

라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노인학대의 가해자 및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대처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노인복지의 제도적 수준이 미비한 경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며 부작용이 상당수 따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 법 제정은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서구의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신고건수가 약하고 사후적 처벌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적 가치관 -가족주의와 효 사상, 유교주의 등이 부모관계에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현시점에서 당사자 및 피해자의 신고, 고발은 어려운 실정이고, 개인주의 및 개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지금 제 3 자의 신고 및 개입의 현실성도 약하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노인 또는 부모 관련 부문을 강화하고, 사회적 서비스를 통한 상담 및 가족 수발자에 대한 교육, 간병수당제도 도입 등을 통한 부양 스트레스 및 부담 완화 제어 및 학대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중. 장기적으로는 고령화율의 급증 (10%상회) 및 부양율이 보다 높아지는 2010년 경(부양율 14.2%로 추정: 이는 1명의 현역세대가 1명의 현역세대가 1명의 노인을 부양함을 의미)에 가서 '노인학대방지법'을 도입할 것인지를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2) 제도상의 문제

노인학대의 근본적인 문제는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제도의 미비와 깊은 관련이 있다. 노인의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인한 노인학대 요인이 발생했을 때 즉 가족의 수발을 보충 지원할 수 있는 가족이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을 때 가족의 수발을 보충 지원할 수 있는 케어 서비스센터와 같은 시설제도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가족이 신체적,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쳐서 학대의 상태로 가지 않도록 노인부양에 관한 사회적 원조시스템의 마련이 시급하다.

실제로 가족이 부양할 수 없는 노인들의 주거시설 확충과 정비, 특히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른 치매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 무료생활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제한되는 등 그 조건이 까다로워서 보호가 필요한 많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을 우선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수용보호시설이 대폭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며 또한 노인부부 또는 혼자 사는 노인들의 살 수 있는 재택보호시스템의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노인학대나 노인 유기에 대한 사회복지차원으로 접근해 갈 수 있는 사회제도의 마련이 절실하다.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이나 대중교육에 대한 캠페인도 그 개선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

또 하나의 방안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감시활동 체계마련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시설수용 노인은 0.3%에 지나지 않는다는 통계가 나와 있다. 즉 대부분의 노인이 가정에서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사회의 신고 감시활동이 필요하다. 무의탁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가정 봉사원 파견사업”이라든지 자원봉사의 장려라든지와 같은 방법의 구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3) 시설상의 문제

노인학대 방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노인학대에 대한 정확한 조사이다.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할 수 있는 공적기관이나 노인학대 상담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민간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기관의 네트워크화로 실제 사례와 공통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확립으로 보다 나은 대책을 수립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외에도 국가가 능동적으로 정부차원에서의 지원사업으로 노인 주거시설 확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4) 전문 인력양성의 문제

효과적인 노인학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를 담당할 전문 인력의 육성이 매우 중요하다. 노인학대 전문가는 노인복지

에 덧붙여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원조 방법에 대한 일정한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하며, 노인들의 개별적인 요구와 상황에 맞추어서 위기 및 응급처리, 사정 및 개입방법과 관련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관련 체계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봉사관리 전문가 또는 봉사사례연구 전문가와 같은 전문 인력의 교육, 확산이 요구된다.

제4장. 노인학대 방지시책의 개선방안

제1절 법률상의 방지대책

1) 노인학대 가해자에 대한 엄격한 법적용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가정폭력도 일종의 범죄로 간주하고, 가정폭력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일부 노인들은 자녀 등에 의한 학대로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을 입고 있으며 학대빈도 또한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심한 폭력이나 학대를 반복적, 상습적으로 행사하는 가해자의 경우는 법적 처벌이 아주 미약하여 이에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노인학대에 대한 학대나 폭력의 재발을 막아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학대가 발생할 경우 학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가해자 감호시설의 설치 등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노인학대 가해자 치료 및 상담

노인 학대원인도 학대자 개인의 정신병리학적 요인이나 사회적인 요인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학대자 개인의 정신병리학적 요인일 경우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가해자 치료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가와의 상담 등을 통해 치료하도록 한다. 필요한 경우 국가가 보상에 줄 수 있는 법률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3) 노인학대 관련법 보완

우리는 아직 노인학대에 대응할 수 있는 독립된 법을 갖고

있지 못하고, 가정폭력방지법에 의거해서 노인학대에 대응하고 있는 현실에 있다. 가정폭력방지법이 1997년 11월 정기국회 의결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법률에서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피해자별로 배우자에 대한 폭력, 아동에 대한 폭력, 노인에 대한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노인학대 문제가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사회복지적 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히 지고 있다. 노인학대 실태 및 방향성 모색을 주제로 열린 한 세미나에서 노인학대는 산업화와 인구고령화, 핵가족화 등 가치관의 변화가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노인을 감당할 수 없게 된 가족에게 부양책임을 전담시켜 가족을 노인학대의 가해자로 방치하고 있다며 노인학대의 대응방안으로 우선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노인학대에 관련된 법,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다만 형법과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가정 폭력에 의한 영역으로 노인학대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이다.

또 가정폭력에 대한 정의도 매우 광범위하고 합의되어 있지 않아 학대의 대상노인은 어느 범위인지, 어느 정도의 행위를 학대의 범주 속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의 기준이 모호하고 구체화하기가 어려워 노인학대 방지법과 같은 독립된 기능을 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이와 더불어 법적체제 조치가 전혀 현실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학대 신고창구도 원활하고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고 있어서 신고체계 정비가 필요하다.

학대신고 행정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없이 민간단체에게 거의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무부, 경찰청, 행정자치부 등이 정부차원에서 업무를 연계하여 노인학대 방지 및 이에 따른 학대신고, 학대자 처벌 등의 제반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적 가치관- 가족주의, 효 사상, 유교주의 등이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는 현시점에서 당사자 및 피해자의 신고, 고발 등 노인학대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법 제정은 오히려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또한 단기적으로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관련부문을 강화해야 하며 이에 사회적 서비스를 통한 상담 및 가족 수발자에 대한 교육, 간병수당제도 도입 등을 통해 부양 스트레스 및 학대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⁵³⁾ (김승권의, 1998). 즉, 학대의 대상노인은 어느 범위인지, 어느 만 큼이나 심각한 행위를 학대의 범주 속에 포함시킬 것인지 등이 논의의 초점이라고 하겠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첫째, 노인학대의 대상이다. 이는 노인학대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가족관계가 어느 범주에 속하는가의 문제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수 있다. 동거 거주원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비동거 가족원까지 가정폭력의 대상에 포함할 것인가? 또한 법적으로 설정된 가족관계에 한정할 것인가? 사실혼의 관계를 포함할 것인가? 그리고 법적으로 가족관계를 종료한 전 배우자의 부모까지로 학대할 것인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사이의 폭력행위를 의미한다. 그런데 가족구성원을 광의로 개념화하고 있어 노인학대 대상은 매우 넓다고 하겠다. 즉, 1)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관계 (사실상의 양친자 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자, 2)계부모와 자의 관계 또는 적모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그리고 3)동거하는 친족 이다 둘째, 노인학대의 범위이다. 이는 신체적 위해 행위에 국한할 것인가? 신체적 폭력일지라도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행위 뿐 만 아니라 간접적인 행위까지를 포함할 것인지 이다. 아울러 적극적 행위인 폭력만 포함할 것인지 소극적인 유기 및 방임의 행위까지

53) 김승권, 조예조.(1998) 「한국 가정폭력의 개념정립과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포함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가정폭력을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학대에 대한 학대의 범위도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와 재산상의 손해 및 손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진다. 동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노인학대는 신체에 대하여 폭행 및 상해를 가하는 행위이다. 특히 상해의 경우에는 미수에 그친 경우를 포함하게 된다.

이는 형법에 명시되어 있는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존속)상해, (존속) 중상해, (존속)폭행, 특수폭행 등에 명시되어 있는 행위를 말한다.(형법 제257조, 제258조, 제260조, 제261조)

다음으로 노후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부조가 필요한 노인을 보호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가 있는 자가 유기하는 경우,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을 학대하는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행위는 형법의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존속)유기, (존속)학대 등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형법 제271조, 제273조, 제274조)

다른 노인학대의 범위는 가정폭력의 대상인 노인을 체포 또는 감금하는 경우이며 협박도 처벌된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의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존속)체포, (존속)감금, (존속)중 체포,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에 준하며, 특히 상습범은 가중처벌된다 (형법 제276조, 제279조, 제278조제279조)

경우로서 형법의 (존속)협박, 특수협박 등에 해당하며, 미수에 그친 경우도 포함된다(형법283조, 제284조)

노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와 모욕을 하는 행위는 노인학대의 유형에 속한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의 명예훼손 및 모욕에 관련된 규정에 의한다. (형법 제307조, 제308조, 제309조, 제311조)

노인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아니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을 수색하는 경우에도 노인학대로 인정된다. 이는 형법의 주거침입죄 중 주거, 신체수색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형법 제321조)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하여 노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경우에 노인학대에 해당되며, 이 경우에 미수에 그치더라도 학대의 범위에 포함된다. (형법 제324조)

다른 노인학대는 노인의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와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행위는 공갈에 그친 경우에도 노인학대의 범위 내에 해당된다 (형법 제350조)

노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기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훼손 또는 은닉 등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취한 경우에도 노인학대에 해당된다 (형법 제366조)

제2절. 제도상의 방지대책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국가적 인식을 제고하고 노인학대가 왜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홍보노력이나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노인학대의 사회문제로서의 인식을 위한 교육 홍보

노인학대는 다른 가정폭력의 문제와 마찬가지로 주로 가정 내에서 가족원, 특히 그들의 자녀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우리가 신문지상 등 매스컴을 통해 접하는 것 보다 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나 가정 내의 문제나 치부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하는 우리문화의 특성과 일반인들의 무관심으로 그리 큰 관심을 끌지는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회의 노출이 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는 있으나 노인학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의 미흡으로 정확한 이해와 개념 등에 관한 정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노인학대에 대한 개념정립과 사회문제로서의 인식학대를 위한

대국민 교육, 홍보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노인학대에 대한 노인들의 인식전환을 위한 교육실시

대부분의 노인들의 경우 자녀들에 의한 학대를 경험하여도 자녀들이 처벌받는 것을 안타까이 여겨 법에 호소하거나 신고하지 않으며, 자식을 고발함으로써 오는 죄책감이나 그로 인하여 학대가 더욱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등으로 노인학대는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의 조사 결과에서도 본인가정 내 노인학대 발생 시 신고의향은 26.9%에 불과해 노부모 학대가 상습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외 대부분의 노인들은 신체 및 재산에 관한 침해에는 민감한 반응을 보이나 노인의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손상에 의한 부양자의 부양부담이 높은 상황에서는 수발에 따르는 불가피한 조치로 간주하여 학대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다. 이는 피해 노인들의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이 부족한 결과에 기인하며, 가족 내의 문제를 외부에 노출시키기를 꺼려하는 적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전반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전환과 가족들의 부적절한 처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노인을 부양한다는 사실은 가족들이 경험하는 보편적 스트레스가 되거나 긴장을 야기 시키는 요인이 된다. 대안적 부양자나 지원이 유용하지 못할 때는 부양자와 노인 중 어느 쪽을 학대자와 피해자로 분류하기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학대의 악순환을 막을 수 있도록 학대자와 피해자 모두를 위한 상담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전문상담기관의 확충과 전문 상담인력의 양성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외 지역사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시설지원 대책

1) 부양자의 부양부담 감소를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노인들의 일상생활능력에 따른 의존성, 인지장애에 따른 의존성이 높을수록 그리고 부양스트레스가 높으며, 신체적, 생리적 건강쇠퇴와 치매와 같은 정신건강장애 역시 성인자녀와의 갈등 및 스트레스를 심화시켜 노인학대를 일으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부양자의 부양부담 감소를 위해서는 노인부양을 주부양자에게만 전담시킬 것이 아니라 다른 가족 구성원들도 적극적인 도움을 제공하며, 부양자에게 다양한 세제 혜택을 확충하여 부양에 의한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고 가족 구성원들과의 역할 분담이 어려울 경우 주간보호소, 단기보호소 등을 이용한 재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마련토록 한다. 이를 위해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차원의 실버시설 건설에 대한 적극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2) 부양자의 노인 부양 및 간호방법을 위한 교육 실시 및 담당 교육장소의 확보

노인 중 일상생활 수행이나 수단적 일상생활 수행이 어렵거나 치매나 외상 중인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부양자를 위해서는 주간보호시설 등을 통하여 노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간호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부양자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주도록 한다. 전문 교육담당 기관에 대한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

노인학대문제의 방지대책은 사회복지, 노인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노인학대 현황의 효과적으로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 노인학대에 대한 개입은 한 기관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역사회 노인복지관과 의료기관의 연계를 통해 다분야 팀 협력 체제를 가능하게 하는 것도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노인학대 상담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노인학대에 대한 불모지나 다름없는 현 우리나라 현실과 자신의 학대사실을 사회적

으로 공개하기를 꺼리는 사회문화적 배경을 전제로 하여 볼 때는 단지 숫자만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본다.

노인학대의 황무지와 같은 한국 현실에서 노인학대 상담 전화 번호를 단일 망으로 하여 단시간 내에 전국적으로 홍보한 것은 사업의 큰 결과로 평가된다. 경찰서 포스터 부착은 지역사회 안으로 밀착하여 홍보된 결과를 얻었고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지하철 차량 스티카 부착(1년간)을 하게 된 것은 홍보의 효과성을 크게 높였다고 사료된다. 이와 같은 적극적인 홍보교육, 옥외 전광판 설치, 대중매체의 홍보 등에 대한 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간차원의 노인학대 발생문제, 쉼터제공, 상담 등 전담창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까리따스 노인학대 상담센터에서는 지난 약 6개월간 (2001년 3월 15일~8월 31) 253명중 192명의 학대사례를 접수하여 상담, 쉼터제공, 정보제공, 가족상담, 법적 조치 등을 제공하였다. 일반 다른 상담전화보다는 적은 숫자라 보일 수 있으나 신고 및 상담에 대한 기피 및 신고 불능이라는 노인학대만의 특징과 사회적 인식의 부재라는 상황을 감안하여 볼 때 그 숫자 뒤에 잠재되어 있는 노인학대 피해자의 존재를 간과해서 안 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현재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바람직한 현상이며, 즉 노인학대에 대한 문의 및 자료 협조 의뢰의 증가, 노인학대상담 자원봉사자 신청 증가와 더불어 상담 건수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여러 홍보매체를 보고 들은 대상자들의 전화 및 내방상담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은 하반기에도 지속적 홍보(서울 지하철 차량홍보)와 더불어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고자 세미나 및 예방교육, 자료집 제작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노인학대에 대한 전문적 프로그램의 개발 등 정부, 민간 차원에서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노인학대와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는 전문가와 실무자가 함께 노인학대 연구회를 발족하여 좀 더 체계적이면서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연구하기 위

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노인학대는 급속도로 증가하는 노인인구와 파괴되는 개인적 부양의 책임이 맞물려 우리사회에서 파생될 수밖에 없는 노인 문제 중 하나이며 또한 근본적인 원인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서비스 체계의 마련이 곧 노인 복지정책의 발전이라 여겨지며 우리나라 노인복지 문제접근에 시기적절한 대응책이라 생각된다.

노인학대 서비스 요구(필요) 및 제공된 노인학대 사례에 대한 서비스는 주로 피상담자의 심리적 지지와 가해자 또는 도움을 제공할 가족원과의 상담이 많았으며 법률정보에 대한 제공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학대라는 문제가 노인에게 우울, 낙담, 분노, 체념 등의 정서반응을 갖게 함으로 수용과 지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였고, 노인학대가 가족 간 갈등의 복잡성 및 만성화와 깊은 연관이 있기에 가족을 포함한 문제 접근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였기 때문이다.

법률과 관련된 서비스는 주로 부양비 또는 부양의무에 대한 판결, 부양자 처벌이 많았지만 이를 법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점이 많다. 즉 법적으로 소송하기 위한 증거자료의 미비, 승소의 불확실성, 법적인 면에서는 신체적 상해가 아닌 언어, 심리적 학대와 방임에 대한 처벌의 가벼움과 한계, 소송과 관련된 경제적인 문제로 법적인 절차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 사례로 이는 괴팍한 며느리의 구타와 행위로 심하게 상해와 고통을 당한 노인이 거의 죽을 지경이 되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 현장에서 법적인 서비스의 한계가 있다.

제4절. 전문 인력의 양성

노인들을 노인학대의 노출로부터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노인학대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전문가 육성이 시급하다. 노인학대 전문 인력은 노인학대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고 노

인학대 문제를 사회적으로 인식시키고 널리 알리는 홍보 능력을 갖추어야 하며 노인학대 상담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상담전문가이어야 한다. 또한 노인학대 문제는 그 분야가 다양함으로 노인복지와 더불어 노인학대에 대한 일반적인 특성과 원조방법에 대한 일정한 전문적인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고 노인의 개별적인 욕구와 상황에 맞추어 위기 및 응급처리, 사정 및 개입방법과 관련체계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관련체계와 서비스를 연결하는 서비스관리자, 또는 사례관리자(case manager)되어야 한다. 최근에 우리나라도 노인학대 연구자들의 관심과 보건복지부에서의 관심의 증가로 노인복지사, 또는 개호복지사가 관심 있는 전문자격증으로 부상되면서 점차 노인학대의 전문성이 인식되어가는 편이다. 노인학대 전문가의 양성에 대한 대안에 있어서 전문가들은 체계적인 사례관리(case management)를 통해서 사례의 분석 및 개입과정, 개입의 성공과 실패 등의 기록을 상세하게 하므로 인해서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거듭하더라도 이 기록을 통해서 다음의 유사한 사례에서 적용하고, 다른 경우에는 분석과 연구를 거쳐서 좀더 발전적이고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이 향상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 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노인 복지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문제가 시급하다. 근로조건이 열악함에 이직률이 높아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이며 이에 서비스의 질이 함께 떨어진다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 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노인들의 기저귀를 갈고, 대소변 수발을 드는 등의 비전문적인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 노인학대가 노인복지의 미비와도 관련이 있듯이, 이들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좀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효율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서 노인학대의 예방차원의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학대의 위기 상황에서 사례관리와 전문적인 기술을 통해서 통합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다.

제5장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는 노인학대는 의존적인 노인과 이를 부양하는 성인자녀 사이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라는 조사에서도⁵⁴⁾ 보듯이 아직도 노인의 보호 망이 가족이라는 혈연관계가 전부라 할 수 있어 경제적 신체적으로 능력이 저하된 노인들은 아무 대책 없이 당하게 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로 인해 가족으로부터 보호 받아야 할 노인이 가족으로부터 학대를 받았을 때, 또한 이에 대한 사회적 보호 망이 전혀 없는 현실에서 존속 살해, 상해까지 당했을 때에도 전혀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예를 들어 죽일거라며 감금된 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할아버지, 폭행당하면서 아들이 무서워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는 할머니, 며느리에게 구박받은 것이 너무도 창피해 죽고 싶다는 할아버지 등등 여러 학대받는 사례 속에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견뎌내는 인권유린의 노인학대 현상이 점점 증가해가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렇다면 이런 문제들이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학대 상황들 속에서 어떻게 인권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사회와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에 대해서 원인과 사례를 연구해보았다. 노인학대로부터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이 학대사실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용이하게 시도된 것이 노인학대 상담전화이다. 효과적인 상담전화를 운영하는 방안으로는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상담전화 단일 망을 설치하여 구호 요청할 수 있는 사회적 체계를 만드는 것이었다.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상담전화 단일 망을 설치하여 Hot-line으로 운영함으로써 짧은 기간동안의 상담사례건수나 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기초구성 나아가 상담센터 인지도 등의 효과성은 높았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상담센터를 운영하면서 정말 학대받는 노인을 도울 사회적 제도와 자원이 전무한 것

54) 한동희, 김정옥. 「노년기 특성에 관련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가족학논집, 제7권』 pp. 185-209

을 시간이 흐를수록 절실히 느끼게 되었으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줄 수는 없었다. 노인학대를 사회구조적인 면에서 문제점을 찾아보고 그 해결점을 구체적인 실천방법으로 진행해야만 할 필요성이 절실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구조적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의 문제는 왜 국가적인 문제요 사회적 문제인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론으로는 노인학대의 문제는 크게는 나라의 충효사상을 바로 세우는 길이며 노인으로 하여금 하나의 중요한 계층으로써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 주는 복지국가의 염원을 실현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인지하였다. 다른 하나는 노인학대의 원인 중의 하나가 경제적 능력의 미확보로 인한 가족의존적인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것이라고 여러 논문에서 언급하였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와 사회가 져야 할 몫이라는 생각을 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양한 노인관련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을 하나의 국가 중요한 계층으로서 국가 노동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인식의 확산이 필요하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었다. 노인의 풍부한 인생경험은 각 분야에서 후세대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또한 국가와 사회가 해야 할 몫이다. 노인과 젊은 세대의 조화는 각 분야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능률적인 행동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반문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야한다고 생각되었고 노인학대 예방 상담서비스 시설 및 서비스는 정부와 민간단체 모두 협력하여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하며, 노인부양기관의 재정지원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늘려나가야 하며, 법의 개정 및 보수를 통한 노인학대 가해자 처벌의 강화에 정부가 앞장 서야 될 것이며, 마지막으로 노인의 의료시설의 확보 및 노인진료기회의 확대 등으로 건강하게 살 권리를 확보해주는 것이 민주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첩경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아직 기초적인 장을 마련하여 발전을 향한 기지개를 피려고 하는 단계지만 위에서 제기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노인학대 신고 문제, 노인학대의 사회적 관심과 지원체계문제, 노인학대에 대한 네트워크, 노인학대에 대한 법제도화 등으로 구분하여 그 해결점을 찾아보는 것으로 제언을 대신하고자 한다.

1) 노인학대 사례의 신고 어려움

노인학대 피해자들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열악한 상황에 있으면서도 부모라는 이름으로 학대사실을 밝히기를 꺼려하거나 스스로 학대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므로 학대노인을 도우려고 해도 가해자가 가로막고 은폐하여 접근할 수 없는 열악한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먼저 노인학대에 대한 현화파악조사가 무엇보다도 선결되어야 한다.

노인학대 신고를 증가시키는 일은 쉽지 않다. 많은 노인이 고통과 어려움 속에 삶을 지탱하고 있는데 이를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지하지 않고 한 가정의 문제로 치부해 버림으로 노인으로 하여금 신고를 기피하게 하여 노인의 기본 권리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사회문제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변화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서 생을 마감하기만을 기다리며 고통 속에 버려져 있는 노인을 도와줄 수 있음으로써 모든 계층이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 변화와 교육이 학대노인을 우선순위로 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일반인에게도 지속적으로 노인학대에 대한 관심을 확대할 수 있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본다.

2)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지원체계의 부족

학대를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는 학대노인은 학대자에게 깊은 상처와 높은 분노감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직계 비속에게 못할 짓을 한다. 라는 죄책감과 수치감으로 괴로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중감정을 갖고 있는 노인이 용기를 내서 도움을 청하지만 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은 '부양자 책임'이라는 결과로 밖에 갈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다. 왜냐하면 사회적 도

음 체계가 거의 전무하기 때문이다.

노인은 일단 자녀로부터 분리되어 정서적 안정을 찾고 싶어 하는 경우에도 갈 곳이 없다. 학대받는 피해노인이 피할 수 있는 특정한 장소가 없어 길거리를 방황하게 됨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학대받는 것에 대한 일시 쉼터의 부재는 다시금 학대발생 장소로 노인들을 옮겨놓은 악순환을 겪고 있다. 자녀로부터 학대받고 있으나 그 자녀에게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 무책임성은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며, 학대받는 노인들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학대 피해자 '쉼터'가 전문상담센터와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 효'를 강조하는 현시점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체계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즉 학대받는 노인을 발견, 신고하여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사회적 도움 망, 그들의 문제에 대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 망, 학대의 재발방지과 예방을 위한 지속적 사후관리 서비스 망이 반드시 필요하다.

3) 노인학대에 대한 네트워크 부족

노인이 학대받는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금기시 하는 우리 사회의 이데올로기가 노인이 기본 인권으로서 당연히 사회적 보호를 받아야함에도 불구하고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숨겨져 방치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의 개인주의가 급격히 이루어지며, 가족의 부모 부양이라는 기능이 감소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노인학대를 그대로 방치해둔다는 것은 곧 헌법에 나와 있는 행복추구권에 위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이슈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해야만 한다. 또한 노인학대에 대한 의료계, 법률계, 사회복지계, 시민단체, 종교단체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 관심을 증진시켜야만 한다.

4) 노인학대 문제의 법제도화

노인학대 문제에 대한 법제도화는 거의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신체적으로 아주 심하게 상해를 입지 않는 한 법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한 상태에 있는 어르신의 경우는 스스로 법적 투쟁을 할 수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그러므로 노인학대의 경우는 노인이 성인으로서의 기능이 불가능한 면이 충분히 있음을 감안한 제도적 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위한 입법화 활동과 각 관련분야간의 인프라 구성과 활동은 당연한 요구라 생각된다.

노인학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며 노인 자신과 가족, 사회, 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특히 한국의 노인 학대는 산업화, 인구고령화, 핵가족화, 가치관의 변화와 같은 외적인 요인들이 노인학대에 직접,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노인을 감당 할 수 없게 된 가족에게 부양책임을 전담시켜 가해자로 만들고 있어 더 이상 노인학대는 개인의 문제나 가정의 문제가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로 대두된다.

우리나라에서 발생되고 있는 노인학대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보다도 노인복지의 제도 및 관행법의 미비와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신체적, 정신적인 의존성이 높은 노인이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처럼 과중한 수발부담이 노인 학대의 요인이 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병든 노인을 그대로 집에 방치하거나, 노인유기와 같은 극단적인 노인학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수발을 보충 지원할 수 있는 케어 서비스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 즉 노인을 돌보고 있는 가족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지쳐서 학대의 상태로 가지 않도록 노인부양에 관한 사회적 원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가족에게 버려지는 노인들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선 실제로 가족이 부양할 수 없는 노인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의 확충과 정비, 특히 치매노인의 증가에 따른 치매시설 등의 확충이 절실하다. 현재 무료 생활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과 조건이 기초생활보호 수급자로 제한되는 등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보호가 필요한 많은 노인들이 지역사회에 방치

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적으로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보호시설이 대폭적으로 확충되어야 하며 또한 노인부부 또는 독거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적인 재택 보호 체계의 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노인학대나 노인유기의 사건들을 예외적인 반인류적 행위로 취급해 버리고 일방적인 경로사상의 양양으로 노인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하며, 우리 사회에도 노인학대가 상당히 내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우리가 자랑해 왔던 효의 미풍양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노인학대에 관한 대응방향을 노인방지법과 같은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법제 제정보다는 노인의 사회적 부양을 강조한 사회서비스 확충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 . 권중돈(1994), 「한국 치매노인 가족의 부양부담 사정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김미혜, 이선희(1998), 「노인학대 측정도구 개발을 위한 일 연구」, *사회복지, 봄호*, 87 - 110
- . 김선희(1996), 「시부모 부양 며느리의 안녕감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김유정(1995),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사업적 접근방법」, 효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김준곤(1996),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특별법의 제정 필요성」, *한국정신보건회사업학회 '96추계학술대회자료집*
- . 김태현(1994), 「노년학. 서울: 교문사」.
- . 김한곤, 역, Bernard E. Blakely(1994),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경향과 과제」. *영남대학교 인문연구*, 제15권 2호, 209 - 227
- . 김한곤(1998), 「노인학대의 인지도와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 *1998년도 한국노년학회 춘계 학술대회*, 93 - 107
- . 김현수(1997), 「노인학대의 실태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 박재간 외 편(1996), 「고령화사회의 위기와 도전」 서울 : 나남출판사
- . 박재홍(1991), 「현대사회문제, 노인문제」. 사회문화연구소
- . 박준기(1998), 「한국 노인학대 실태에 관한 연구-신문기사에 나타난 사례를 중심으로」. 강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반형욱(1997), 「노인학대의 실태조사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서병숙(1993), 「노인연구」. 서울, 교문사

- . 서 윤(2000),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인지와 목적실태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연구*, 통권 제 7호, 21 - 71
- . 서혜경(1995), 「노인학대의 실태와 법의 필요성」. *한국여성의 전화*. 가정폭력방지법 전문가 워크숍 자료, 38 - 62
- . 양옥남(1995), 「노인과 부양자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이선이(1998), 「노인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 이성희, 한은주(1998), 「부양자의 노인학대 경험과 관련요인」. *한국노년학*, 제 18권 3호, 123 - 141.
- . 이영숙(1997), 「고부관계에서 발생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2호.
- . 이해영(1996), 「새로운 복지문제로서의 노인학대에 관한 고찰」, *노인복지 정책연구*, 3.
- . 장인협, 최성재(1996), 「노인복지학」, 서울대학교 출판부.
- . 전길양, 송현애(1997),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I - 기혼 성인남녀의 학대와 방임에 대한 인식 및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15권 3호.
- . 정경희(1998), 「사회문제로서의 노인학대」, 가정폭력과 청소년, 청소년보호위원회, 123 - 146.
- . 조미숙, 이윤로, 윤혜미(1999), 「가정폭력과 사회복지」, 학지사
- . 조예조, 김승권, 김유경(1999), 「노부모 학대 실태에 관한 사례연구 - 6개 대도시 노인(종합)복지회관 이용노인을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최선화, 공미혜, 한동희(1998), 「학대받는 여성노인의 상황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제 34권, 189 - 214
- . 최순남(1995), 「현대노인복지론」. 한신대학교 출판부.
- . 최혜경(1993), 「노인학대에 관한 인식과 원조요청 태도에 관한 연구」. *전주대학교 논문집*. 22집
- . 통계청(1996), 「장래,인구추계」.
- . _____(1998), 「도표로 보는 통계」.

- . _____ (1999), 「 1999 한국의 사회지표」.
- . _____ (1999), 「1998 경제활동인구연보」.
- . 한국노년학회(2000) : 「노년학의 이해」, 대영문화사.
- . 한국노인의 전화(1998) : 「상담사례 분석집 IV」
- .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5) : 「노인의 범죄 및 범죄피해에 관한 연구.
- . _____ (1996), 「존속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조선일보, 1961년-1997년
- . 한동희, 김정옥(1994), 「노인학대에 관한 이론적 고찰, 대한가정학회지, 제 32권 4호, 45 - 56
- . _____ (1995), 「노년기 특성에 관련된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가족학논집, 제 7권, 185 - 209
- . 한동희(1996), 「노인학대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한은주, 최배영(1997), 「상징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에서 본 부모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 35권 2호, 373 - 383
- . 한은주(2000), 「노인학대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 Block, M. R., & Sinnott, J. D.(1979), 「Methodology and Result, In M. R. Block & J. D. Sinnott(eds.)」, The Batterde Elder Syndrome, 「An Exploratory Study, Center on Aging」, University of Maryland.
- . Childs, W., Hayslip Jr., & Raduka(2000), 「Young and Middle-aged Adult Perception of Elder Abuse」, The Gerontologist, Feb.
- . Christine L., & McDaniel, J.D.(1997), 「Elder Abuse in Domestic Setting Internet」.
- . Dyer et al(2000), 「The High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Dementia in Elder Abuse or Neglect, Geriatrics」, May.
- . King, N. R.(1986), 「Exploitation and Abuse of Older Family

Member, Abuse of The Elderly]

- . Lach & Pillemer(1995). ' Abuse and Neglect of Elderly Person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32(7), 437 - 443
- . Penhale, B.(1993), 'The Abuse of Elderly People : Consideration
for Practice, British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 . Pillemer, K. A., & Finkelhor, D.(1989), 'Causes of Elder Abuse :
Caregiver Stress Versus Problem Relatives], *American Journal
of orthopsbchiatry*, Vol. 59(2), 179 - 187
- . Steinmetz, S. K., & Amsden, D. J.(1983), ' Dependent Elders
Family Stress and Abuse,] In Brubaker, T. H.(Eds.), *Families
Relationships in latter life*, Sage Pub, Inc., 1st Printing, 173
- 192

ABSTRACTS

-- A study on the methods to prevent elder abuse--

Kim, Kwang Suk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The aged should be honored as a senior of the household, but in modern society the status of the aged is not only getting lowered, but also becoming an object of abuse. The objectives of this thesis is to understand seriousness of substance abuse of elder and to address it as a social issue and to provide multiple strategics that improve elder abuse.

For this study, this thesis classifies elderly abuse, based on literature reviews, into types of a physical abuse, a verbal and emotional abuse, a financial exploitation, and a negligence and refusal of caring, and analyzes how these types are distributed in the cases.

Also through this study, I made an efforts to find the national alternatives that prevent multiple problems to be in elder abuse. Furthermore, this research attempted to figure out how laws in relating to elder abuse in present repair and remake.